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2026.11.12.
(신청기업용)

목차

1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3p

2 발급 기준 및 관련 사항 6p

3 신청 절차 안내 10p

4 취약계층 증빙서류 검토 방법 27p

5 질문과 답변 51p

1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3p

1. 추진 배경 ---------- 4p
2.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 ---------- 5p

추진 배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확대(2천만⇒5천만 원) 및 2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1억원으로 확대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견적서 제출

● 취약계층 고용을 증대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방지 등 건전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을 일정비율(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한하여 확대 적용

※ 수의계약 금액확대 대상

구분	기존	변경
기업 또는 조합	①여성기업, ②장애인기업	①여성기업, ②장애인기업 ③**사회적기업**, ④사회적협동조합, ⑤자활기업, ⑥마을기업 ※ 기획재정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취약계층고용비율(30%)을충족하는기업

< 관련법령 등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30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8-4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 「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 고용률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3649, 2018.07.27)」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활기업(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마을기업(광역자치단체)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

1 수의계약 확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2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에 해당**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취약계층 30% 이상 참여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기준 산정

3 기대 효과

·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제고

2 판단기준 및 관련 사항 6p

1. 주요 판단기준 ---------- 7p
2. 관련 사항 ---------- 8p

발급 기준

1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_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table>
<tr><td>발급대상</td><td>-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td></tr>
<tr><td>취약계층고용비율</td><td>-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100</td></tr>
<tr><td rowspan="2">유급근로자
인정기준</td><td>-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26.01.27.)
<table>
<tr><th>구 분</th><th>고용보험 가입일</th><th>고용보험 가입 일수</th></tr>
<tr><td>유급근로자 인정</td><td>2025.08.01.</td><td>180</td></tr>
<tr><td>유급근로자 불인정</td><td>2025.07.31.</td><td>179</td></tr>
</table></td></tr>
<tr><td>-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여성가장, 난민,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자 등)</td></tr>
<tr><td>기타</td><td>·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가능</td></tr>
</table>

발급 기준

1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지침 에 따름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 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이후 '저소득자 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유급근로자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별표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상, '유급근로자 기준' 적용

* 근로기준법 제2조 1호 - 근로자의 개념 :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에 해당

●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제외)

* 민원처리에 관한 법과 진흥원 「민원사무처리규칙」 준용

관련 사항

2 관련 사항

- 제출 후 취약계층 검증과정에서 기업이 신청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의 고용비율이 상이 할 수 있음
- 신청 후 검토과정에서 취약계층 근로자가 신청시점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서류 확인에 유의
- '고용보험체크' 클릭 시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한 자동확인 사항으로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오기 없이 등록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에 해당하는 근로자 등록(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선청성 혹은 희귀병 치료자)
- 모든 첨부 서류는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 후 등록, 파일 용량 준수(50메가 이하)
- 검토 결과(발급승인, 보완요청 등) 수신 가능한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록 및 수신 동의하여야 알림 가능(자동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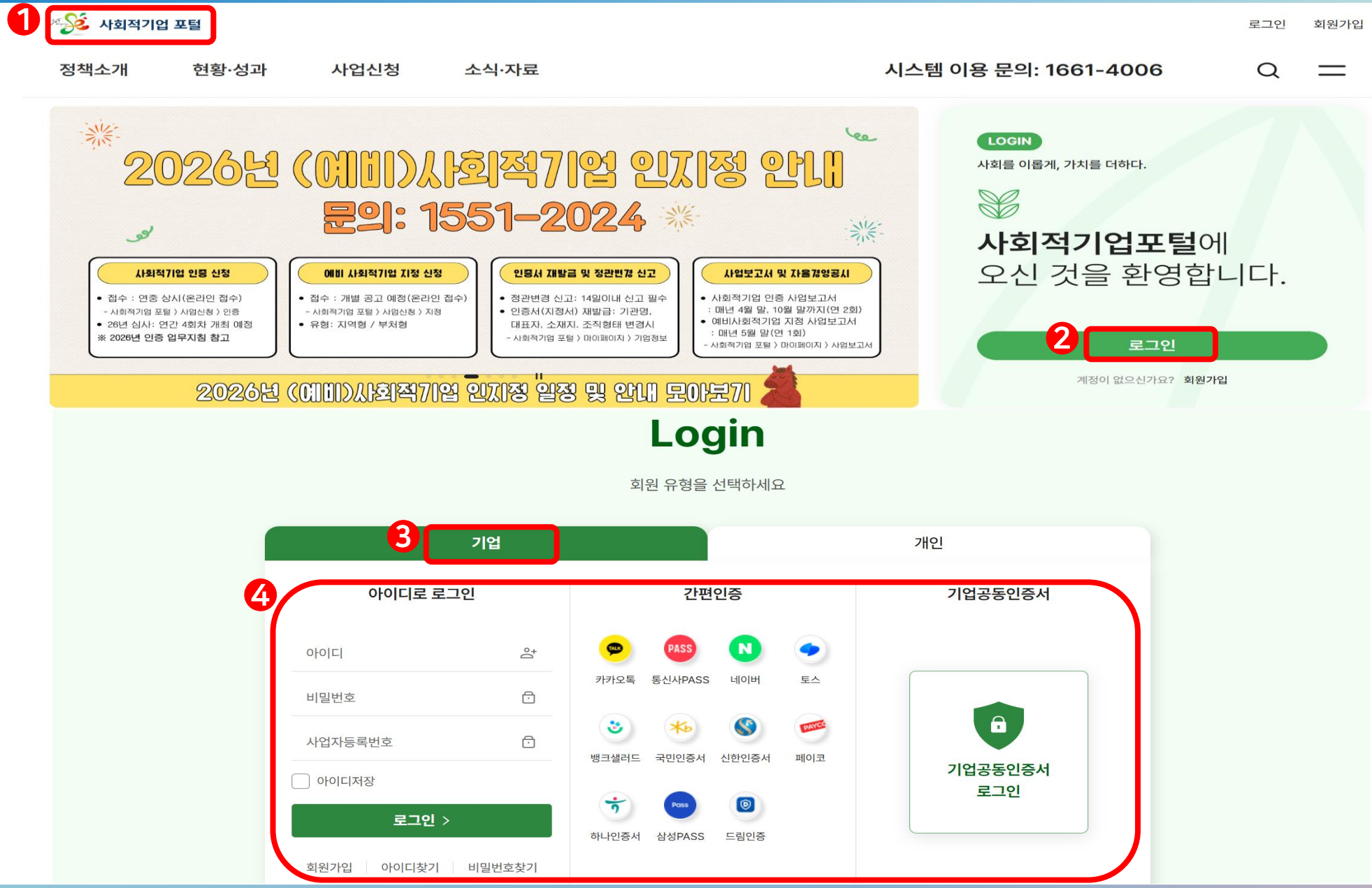
3 신청 절차 안내 10p

1. 발급 절차 ---------- 11p
2. 신청 화면 안내 ---------- 12p

발급 절차

단 계	수행방법	비고
발급신청·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신청서(온라인), 유급 근로자명부(온라인) 및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유급근로자 전체)	신청기업 →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사회적기업 포털(로그인) → 통합사업관리시스템(클릭) → 취약계층고용비율점검신청(클릭) → 확인서신청(클릭)	
신청서 검토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용보험 가입여부(서류 검토) 취약계층 검증(관련 증빙서류 검토)	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검토 소요기간: 15일 이내이며, 신청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신청 결과 통보 (SMS, 이메일)	SMS, 이메일 결과 통보	진흥원 → 신청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발급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80일 유효기간을 가짐	신청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 방법(로그인)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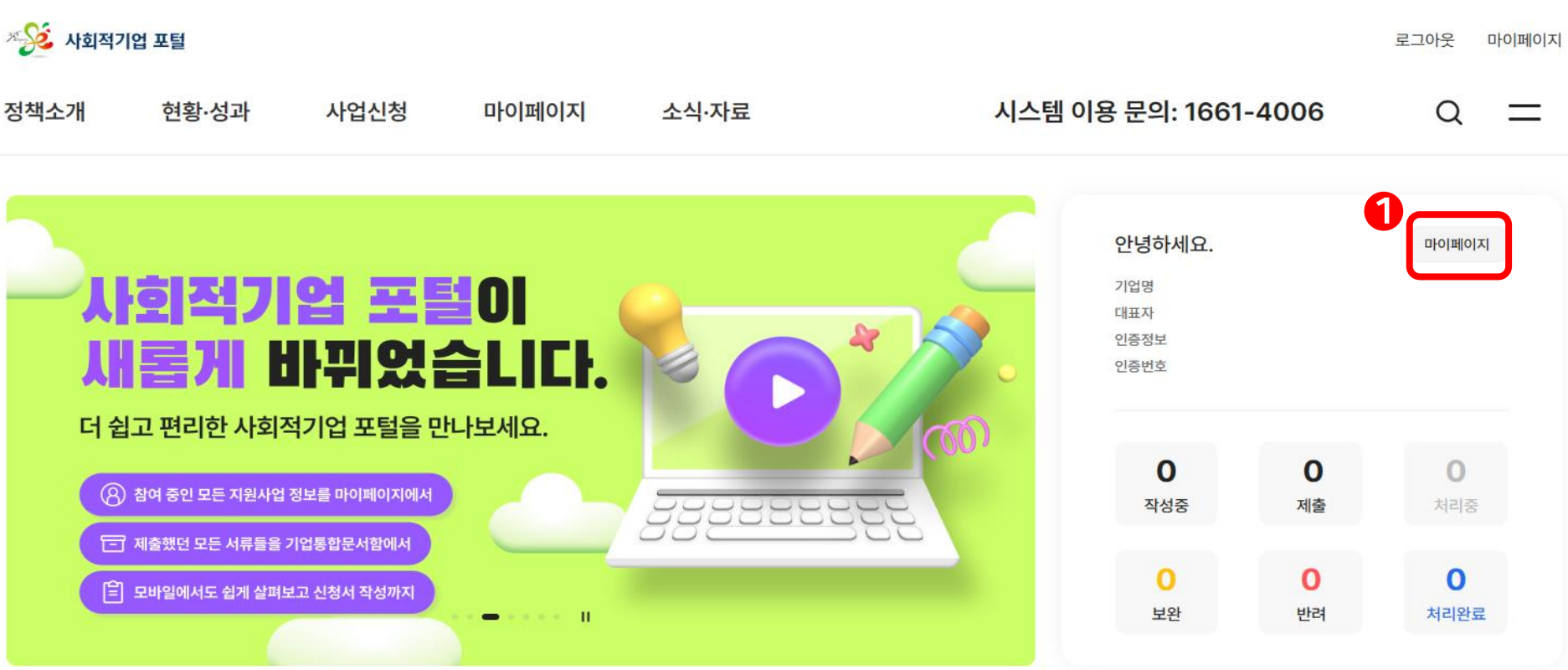
① [사회적기업 포털] 접속
www.seis.or.kr

② 화면 [로그인] 클릭

③ 회원유형 [기업] 선택

④ [아이디/비밀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로그인]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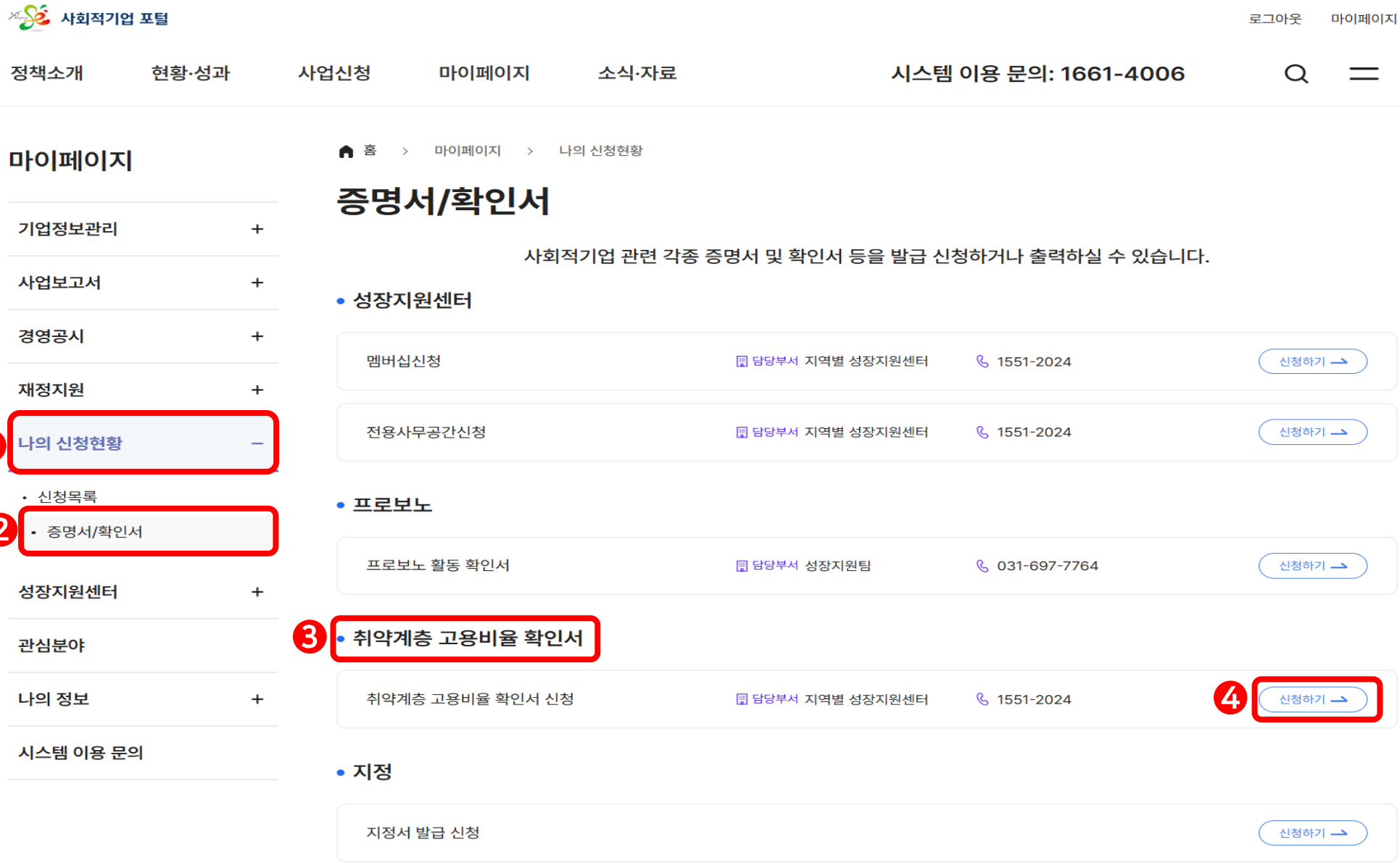
접속 방법(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화면 접속
(통합사업관리시스템)

①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 [마이페이지] 클릭

접속 방법(화면 경로)



화면 접속
(확인서 관리)

① [나의 신청현황] 클릭

② [증명서/확인서]

③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

④ [신청하기] 클릭

접속 방법(화면 경로)



화면 접속
(화면 버튼 기능)

① [발급기준] 확인 및 [신청서],[유급근로자명부]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확인 및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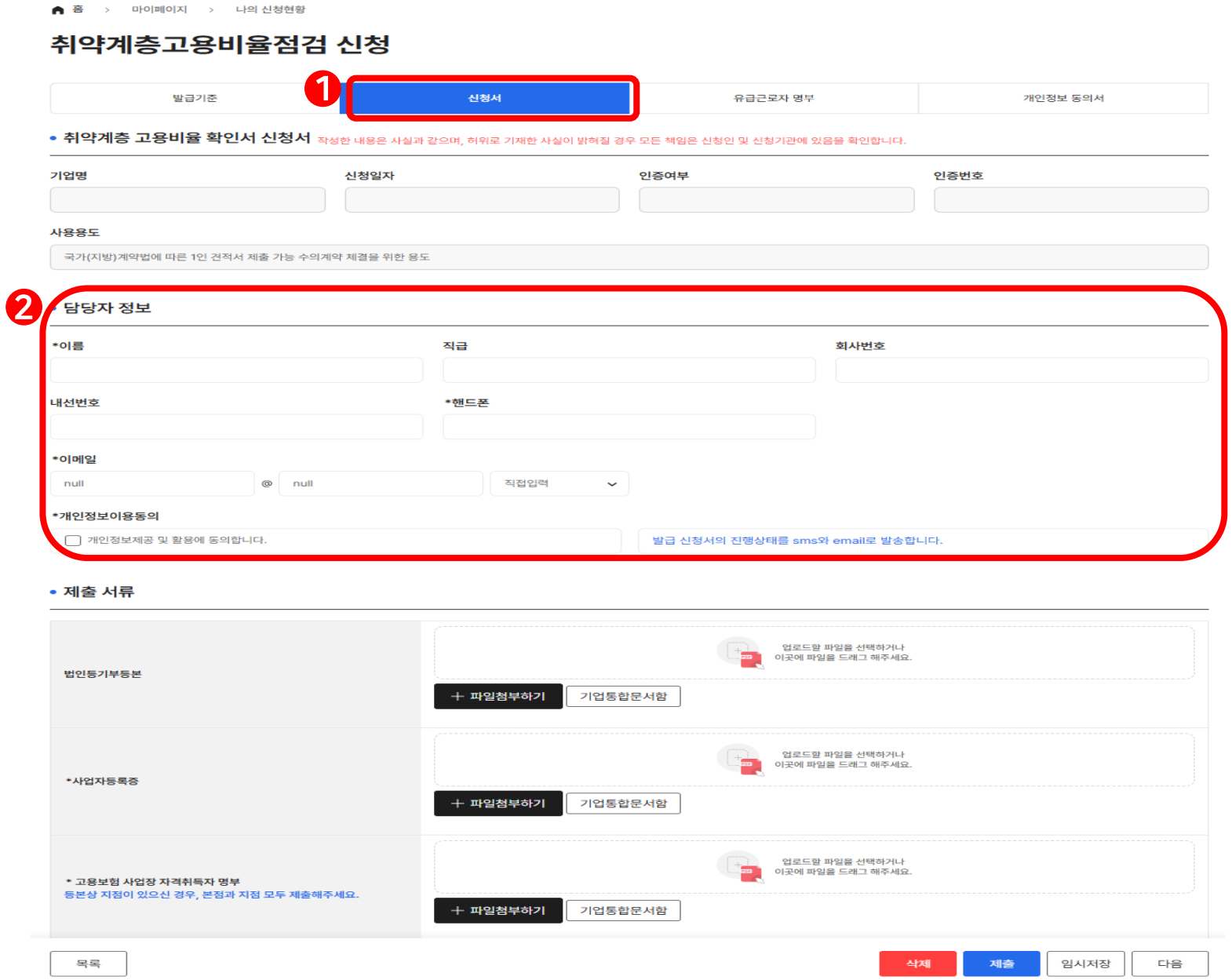
② 취약계층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기준 확인

*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내용 확인 바로가기 클릭
*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내용 확인 바로가기 클릭

③ [다음] 클릭

* [목록] : 첫화면 마이페이지 목록으로 이동(기존 내용 저장 되지 않음)

신청서(신청서 작성)



화면 접속
(신청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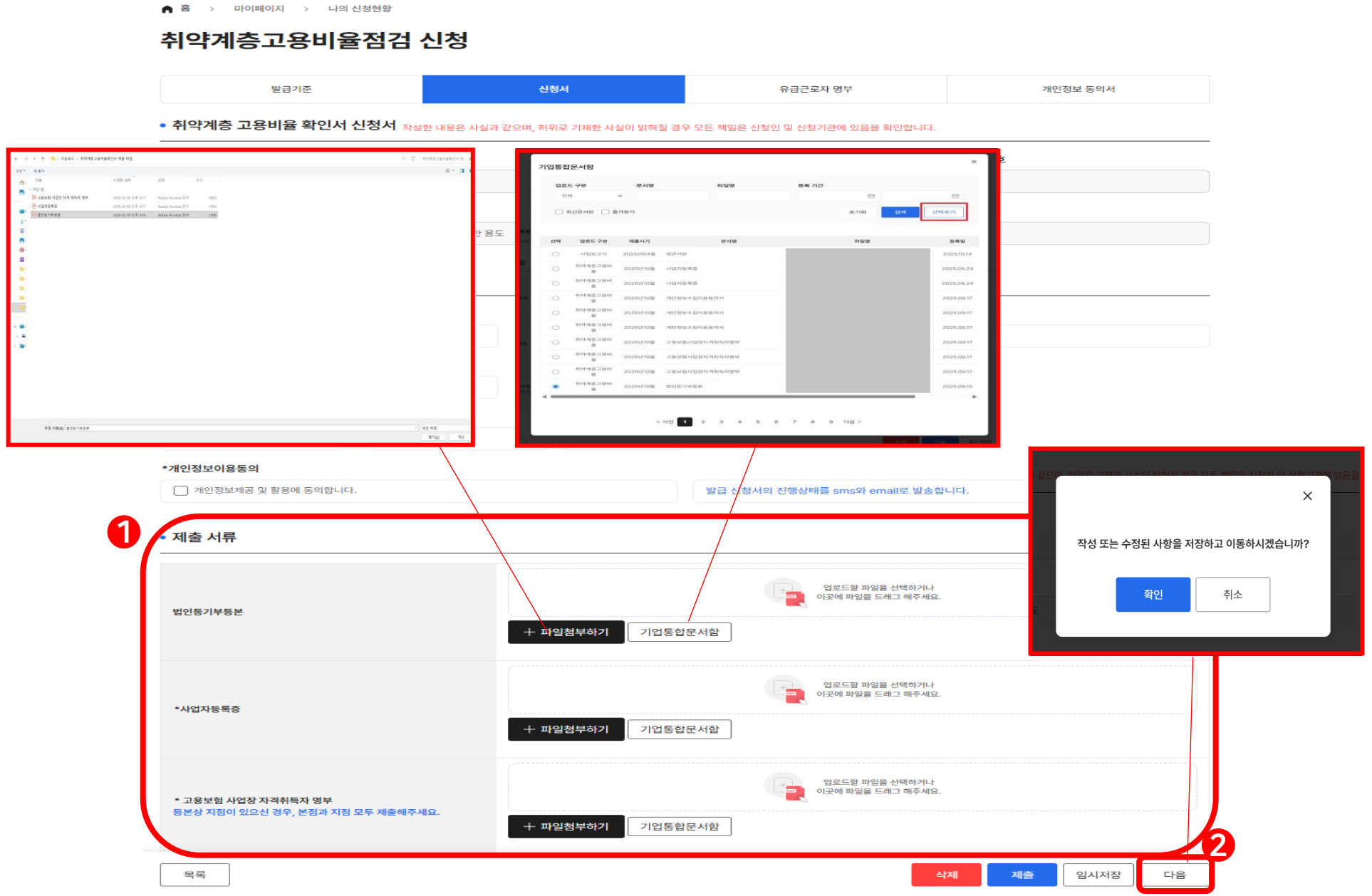
① [신청서] 탭 클릭

② [신청서]입력정보확인

* [이름] : 신청자 성함 입력
* [직급] : 신청자 직급 입력
* [핸드폰], [이메일] : 신청자 연락처 정보 입력
* [개인정보이용동의] : 보완요청, 발급 등 문자 및 메일 발송 문자와 메일 발송

- [목록] : 마이페이지 이동(기존 내용 저장 되지 않음)
- [삭제] : 임시저장인 건에 대해 삭제하는 버튼
- [제출] : 진행상태가 [임시저장] 인 건에 대하여[제출]상태로전환
- [임시저장] : [신청서], [유급근로자 명부], [검토 및 승인] 탭을 수정 및 저장하는 버튼
- [다음] : 입력한 내용을 유지한 채, 다음 단계의 화면으로 이동

신청서(제출서류 등록)



화면 접속
(신청서 작성)

① [제출서류] 제출서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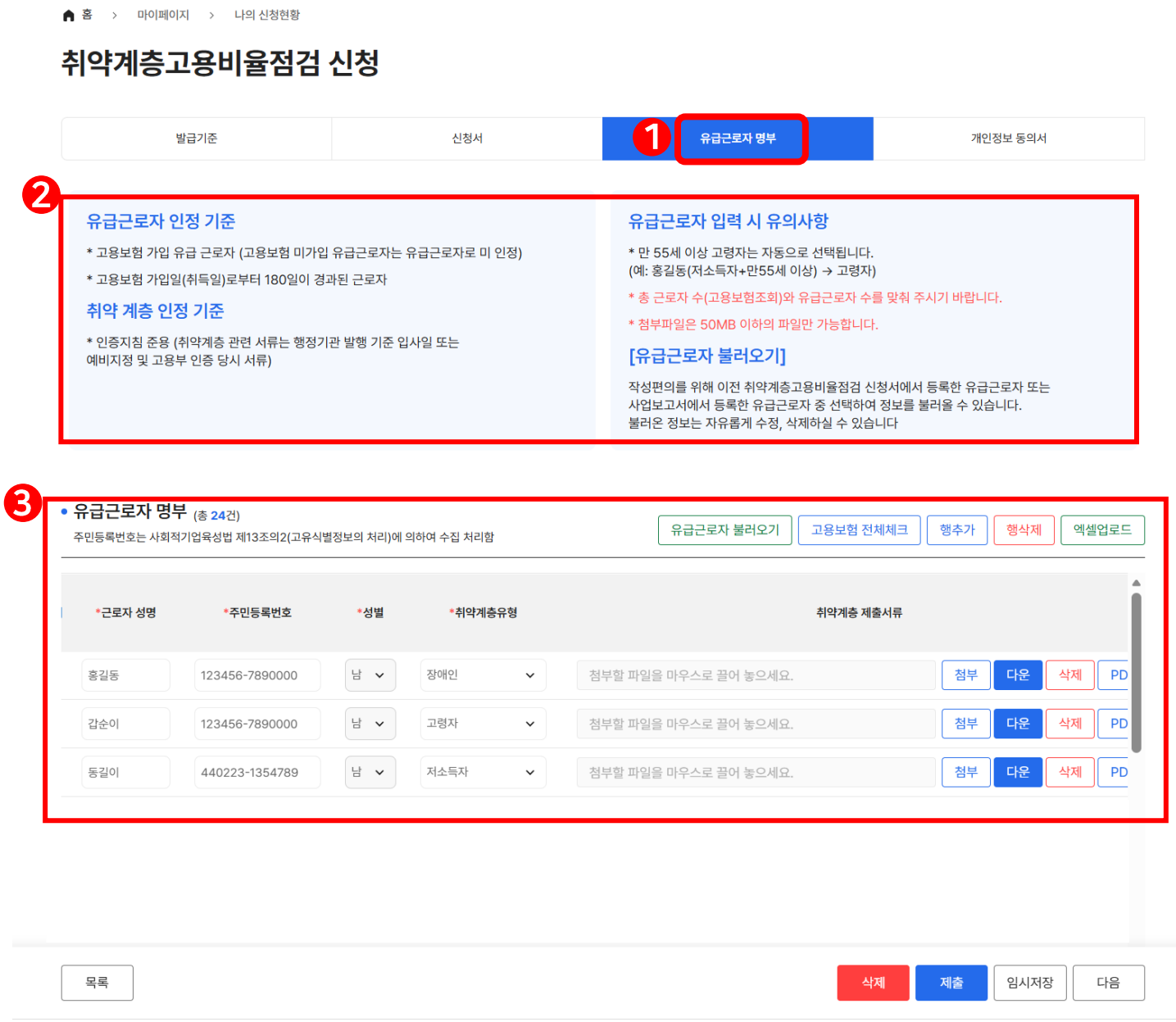
- [법인등기부등본] : 최신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정보의 서류 제출(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
- [사업자등록증] : 최신 자료 제출, 변경된 경우 반영된 서류 첨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업정보 수정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하여 처리 된 후 확인서 신청)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본점+지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확인 위한 서류
- [파일첨부하기] : 컴퓨터에서 관련 파일 불러오기
- [기업통합문서함] : 마이페이지-기업통합문서함에 저장된 문서 불러오기

② [다음] 수정사항 저장 후 이동

유급근로자(화면 및 버튼 안내)



유급근로자 명부 (화면 및 버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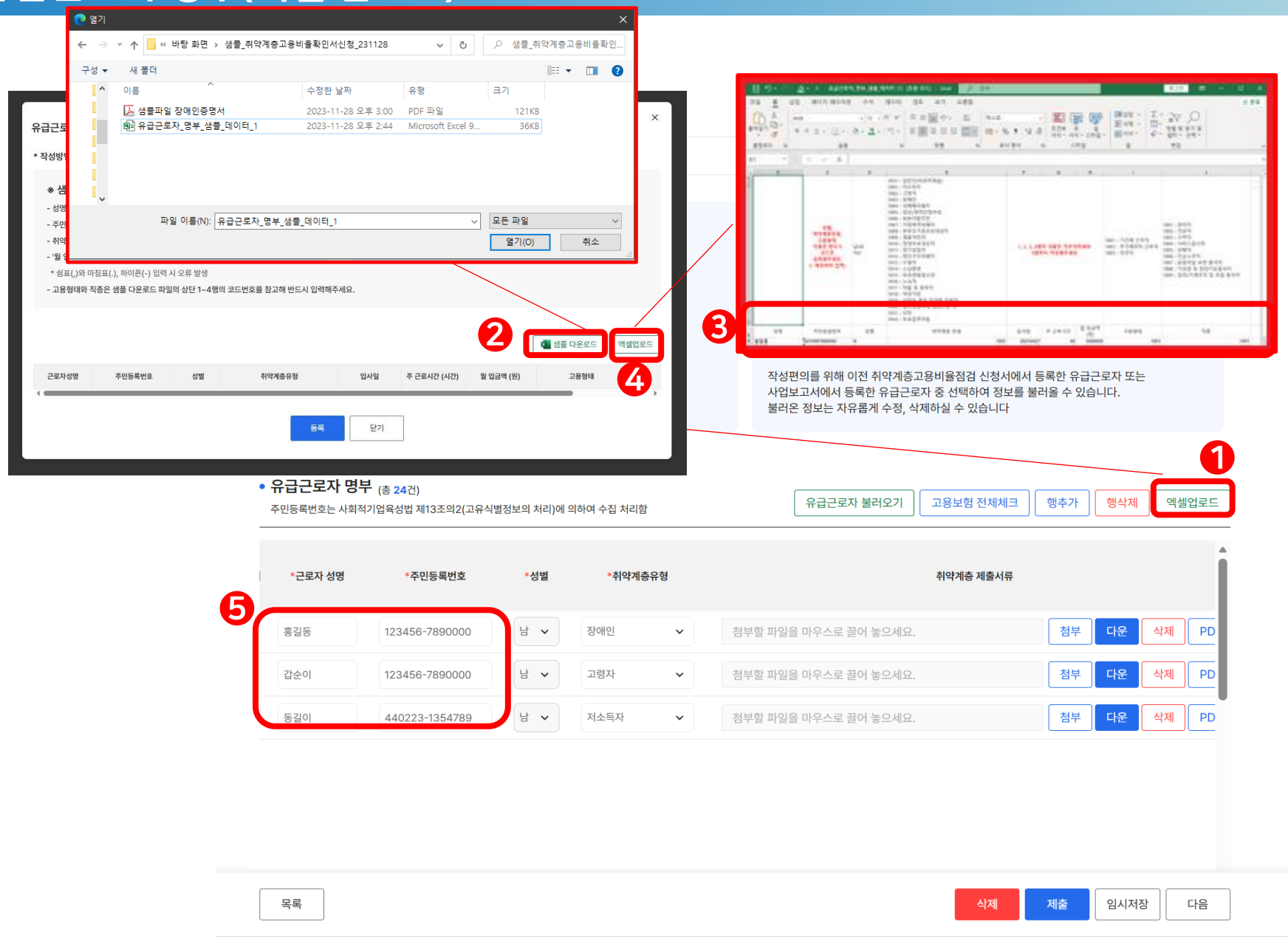
① [유급근로자 명부] 탭 클릭

② 근로자 인정 기준, 유의사항 안내

③ [유급근로자 명부] : [검토 및 승인] 탭에 동일 내용 확인 가능, 취약계층 수정 시 명부탭에서 수정후 [저장]클릭

- [고용보험체크] : 유급근로자 해당 여부 영역(기업명, 취득상실일)확인
- [행추가] : 유급근로자 추가 버튼
- [행삭제] : 유급근로자 삭제 버튼
- [액셀업로드] : 유급근로자를 엑셀로 한번에 추가하는 버튼

유급근로자 명부(엑셀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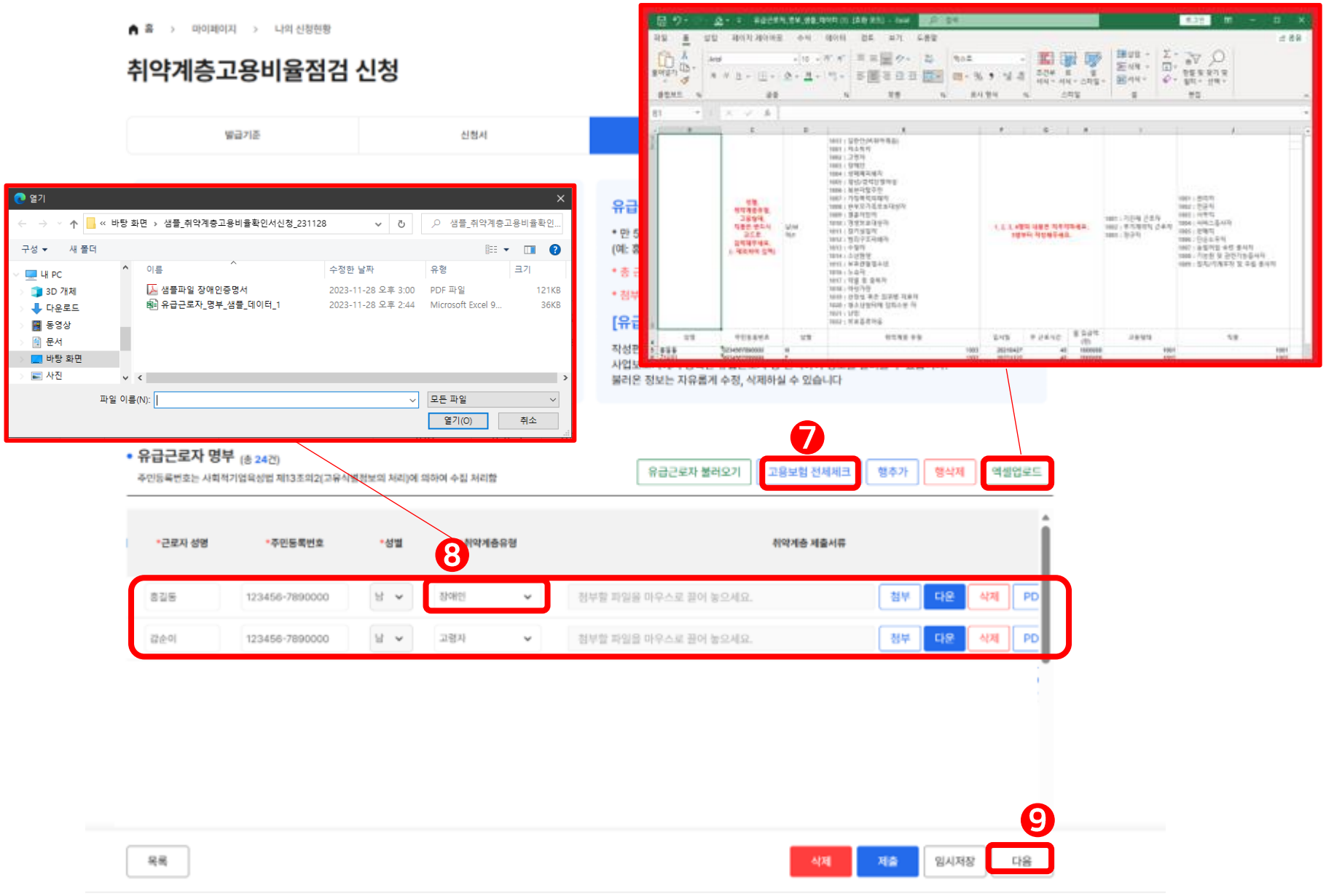
유급근로자 명부
(엑셀 업로드 1)

※ [엑셀 업로드] 방법 1

① [엑셀 업로드] 클릭 → ② 팝업 화면에서 [샘플파일 다운로드] 클릭 → ③ 샘플 양식에 맞추어 작성 → ④ [엑셀 업로드] 클릭 (작성한 파일 업로드 및 업로드 된 내용 확인 및 수정) → ⑤ [유급근로자 명부] 탭에서 화면에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엑셀 파일 등록 시 입력하지 않은 행이 인식되어 오류 나는 경우 해당 행 전체를 엑셀에서 삭제 후 업로드 또는 샘플파일에서 해당 열 제외 재작성

유급근로자 명부(엑셀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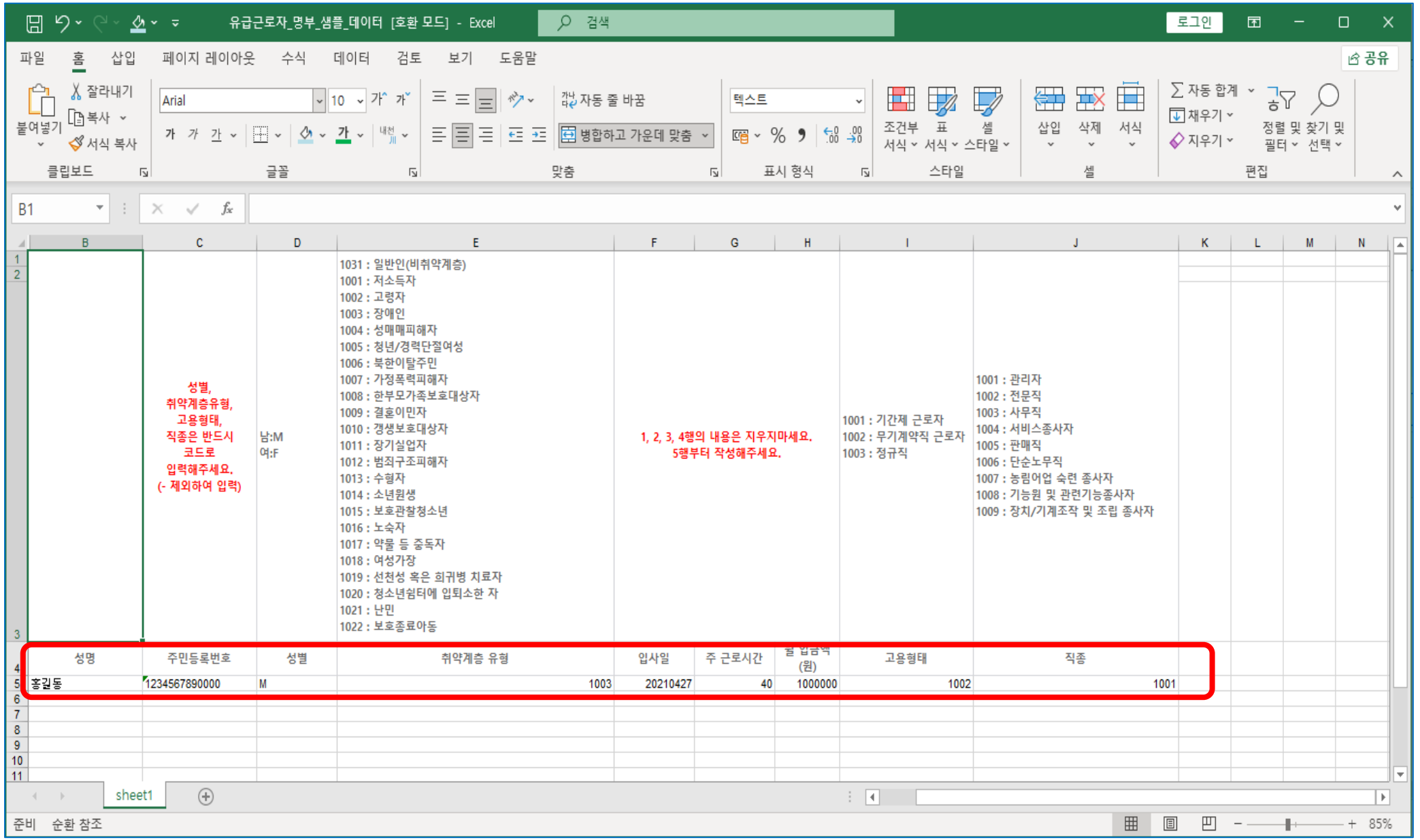
유급근로자 명부
(엑셀 업로드 2)

※ [엑셀 업로드] 방법 2

⑦ [고용보험 전체체크] 버튼 클릭 → ⑧ 취약계층 근로자에 [취약계층 제출서류] 개인별 첨부(고령자는 첨부X, PDF파일 첨부) → ⑨ 완료된 내용 확인 후 [다음] 수정사항 저장 후 이동

※ 엑셀 파일 등록 시 입력하지 않은 행이 인식되어 오류 나는 경우 해당 행 전체를 엑셀에서 삭제 후 업로드 또는 샘플파일에서 해당 열 제외 재작성

유급근로자 명부(엑셀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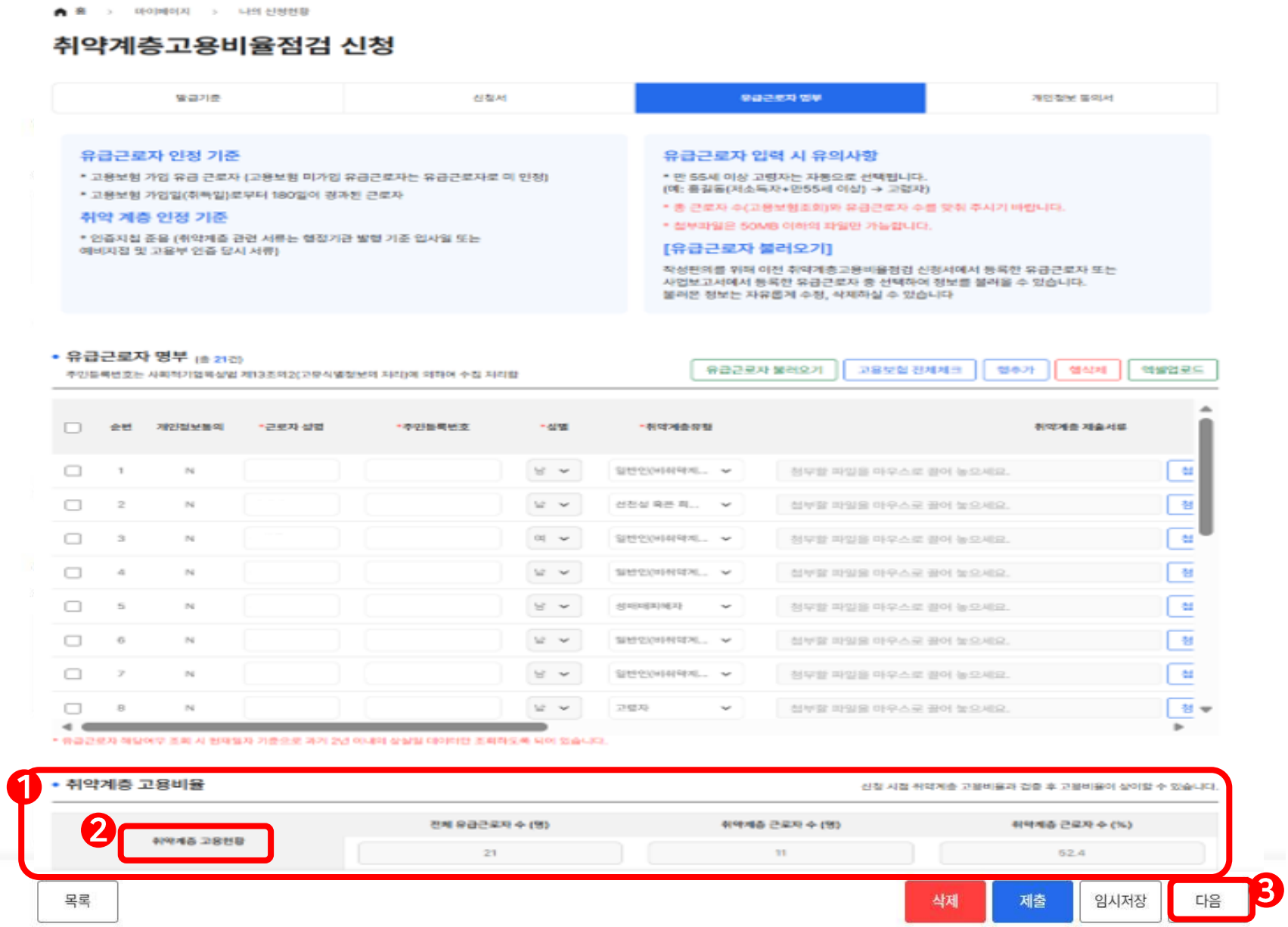


유급근로자 명부
(엑셀 업로드 3)

② 샘플파일 내 주요사항 안내

- [성명] : 문자 작성
- [주민등록번호] : 숫자만 작성
- [성별] : F(여자) 또는 M(남자) 영어 대문자 작성(한글, 영어 소문자X)
- [취약계층 유형] : 숫자 코드 작성(고령자이면서 다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우선됨(만55세이상)(사회서비스 대상 제외)
- [입사일] : 근로계약서 입사일자 숫자 입력(날짜형식X)
- [주 근로시간(시간)] : 숫자 입력
- [월 입금액(원)] : 최근 입금 금액(숫자만 입력, 천 단위 구분 기호X)
- [고용형태] : 기간제, 정규직, 무기직 등 관련 코드 숫자만 입력
- [직종] : 관리자, 사무직 등 관련 코드 숫자만 입력

취약계층 고용비율(검토 과정에서 변동되는 값)



취약계층 고용비율
(비율 확인)

① [취약계층 고용비율] 탭은 입력 화면이 아닌 조회 화면으로 검토과정에서 변동되는 값

② [취약계층 고용현황] : 기업이제출한 유급근로자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와 취약계층 근로자 수, 취약계층 고용비율표기

※ '유급근로자 명부' 탭에서 근로자 별 '고용보험체크'를 클릭하더라도 비율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검토 및 발급 후 확인 가능

③ [취약계층 고용비율] 탭을 확인 후 [다음] 버튼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민감정보 수집 대상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고지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내용 [상세내용 보기 클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내용 [상세내용 보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

①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유급근로자 전체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선천성 혹은 희귀병 치료자

② **· PDF 첨부파일**

기업담당자가 위에 해당하는 유급근로자 전체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③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EFORM 전자동의서

유급근로자가 직접 EFORM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접속하여 서명 후 등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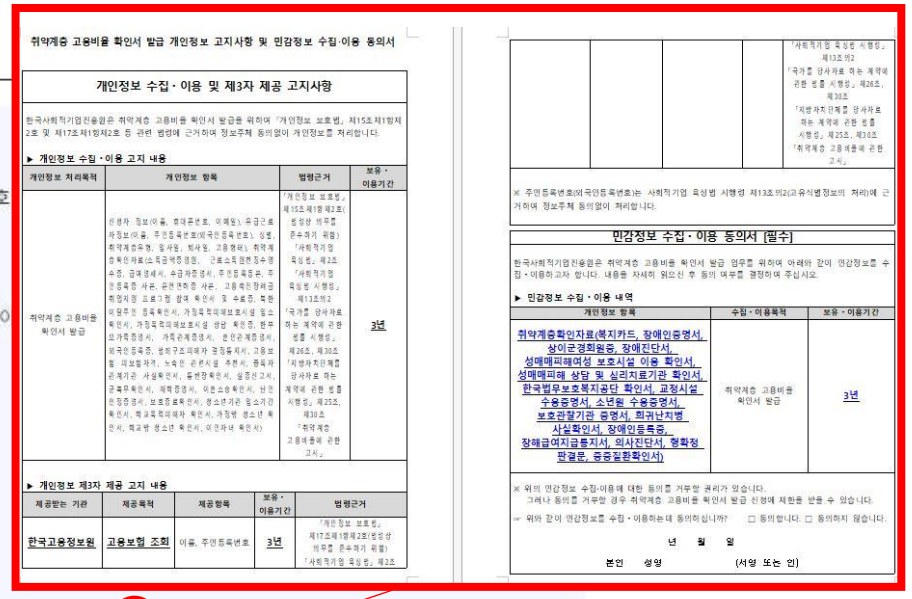
· EFORM 전자동의서 절차 안내

1. "EFORM 전자동의서 " 를 선택하면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링크가 자동 생성됩니다.
2. 기업 담당자는 생성된 링크를 해당 유급근로자에게 배포합니다. (사내 게시판 또는 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3. 유급근로자는 전자문서링크에 접속하여 서명 후 전송을 하면,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4. 기업 담당자는 자동으로 업로드 된 동의서파일을 신청서 상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서 제출 대상 유급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동의서가 등록되면, 신청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유급근로자 수와 전자동의서 수가 일치해야 신청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주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PDF 첨부파일 또는 EFORM전자동의서 중 한가지 유형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PDF 첨부 파일 | EFORM 전자동의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개인정보 고지사항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고지사항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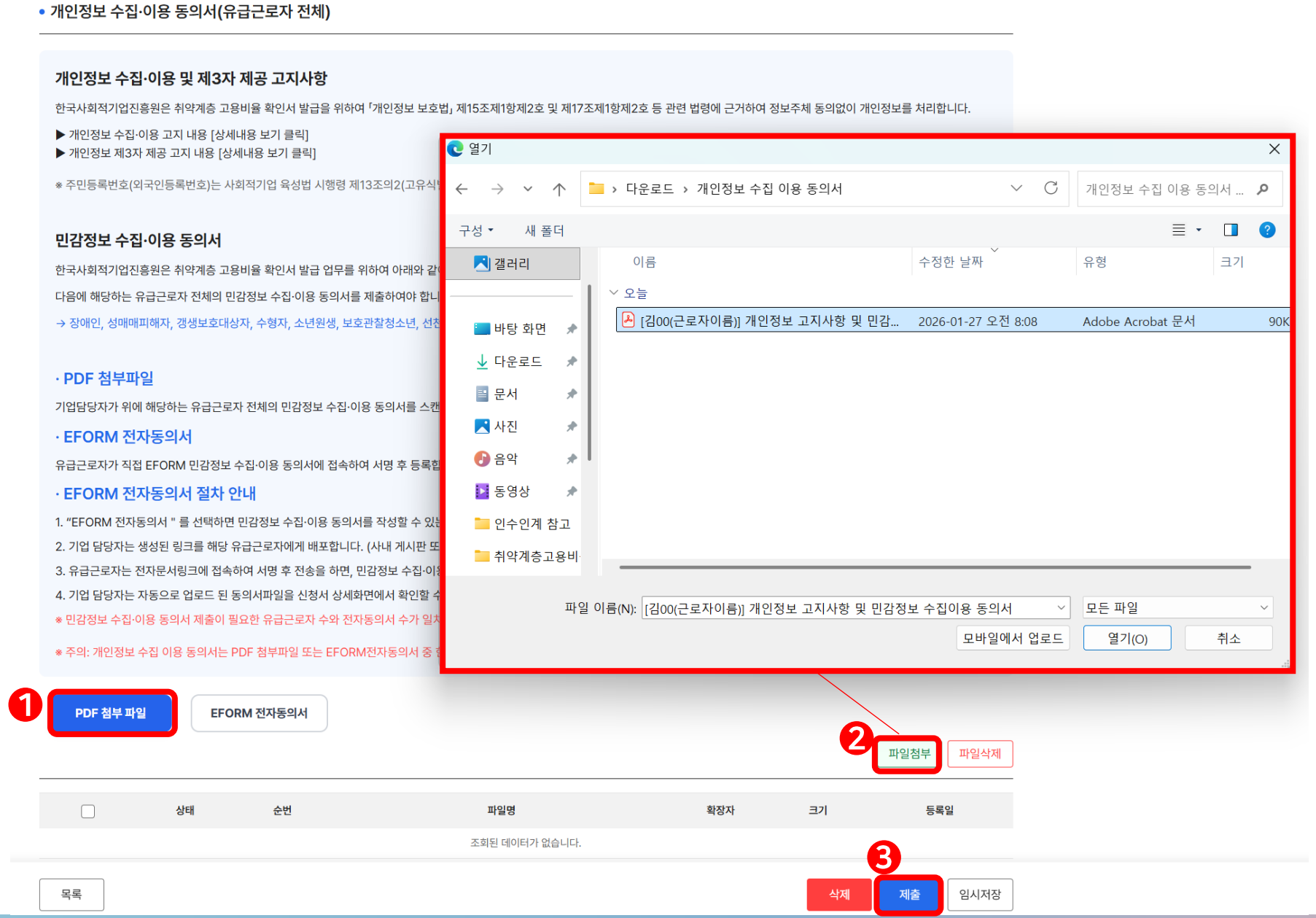
개인정보 동의서
(민감정보 수집 대상자)

①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급근로자중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선청성 혹은 희귀병 치료자 해당시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제출 필요

② [PDF 첨부 또는 EFORM 전자동의서] 민감정보 수집 동의서 중 등록 방법 확인

③ [PDF 첨부시,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클릭하여 한글 서식 파일 다운로드 출력후서식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PDF 제출 방법)



개인정보 동의서
(PDF 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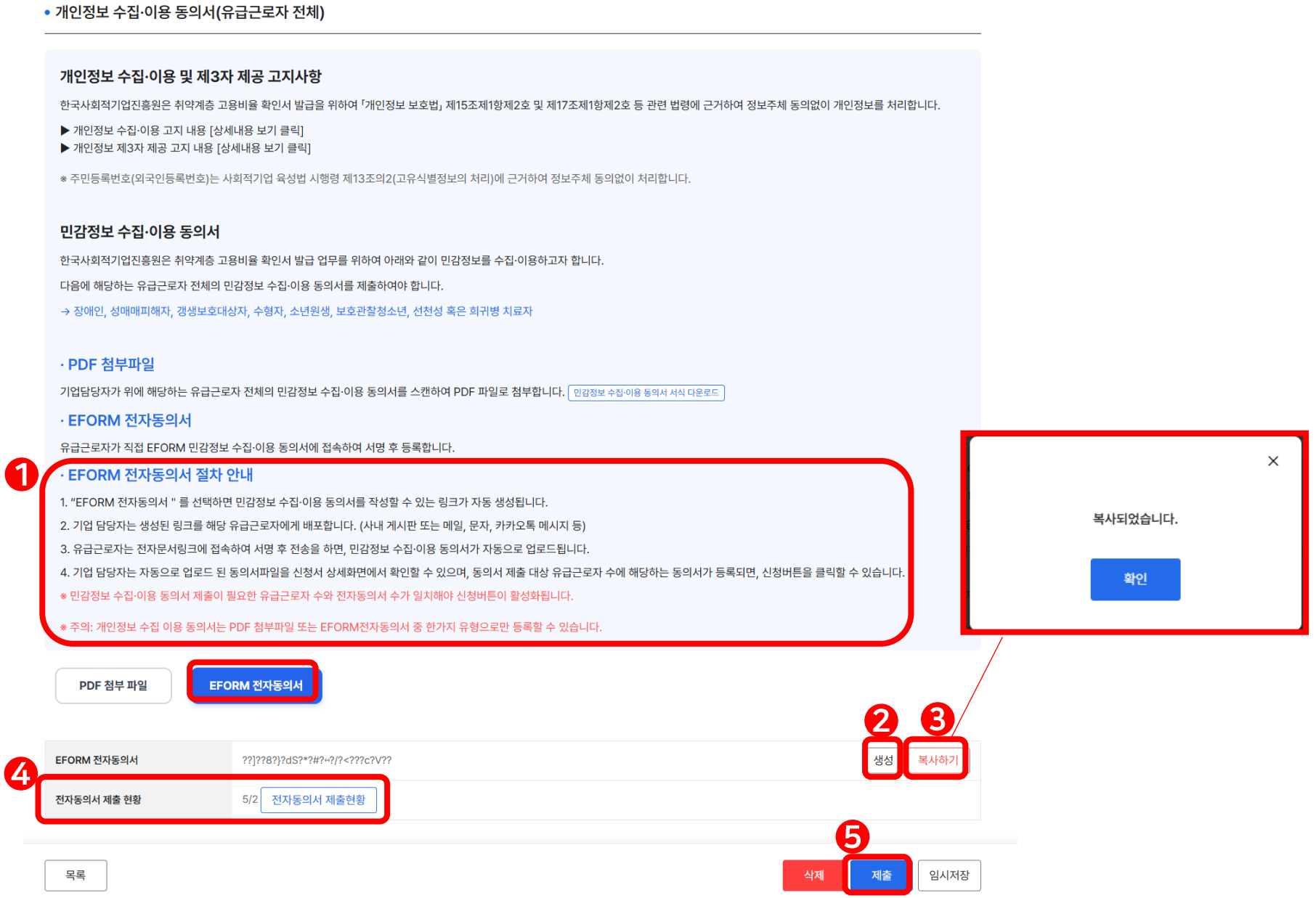
① [PDF 첨부 파일] 근로자 동의서식 작성 및 스캔 하여 제출 준비

② [파일첨부] 민감정보수집·이용동의서해당근로자작성스캔서식열기및하단파일목록업로드확인

③ [제출] 내용 확인 후 임시저장 또는 [제출] 버튼 클릭

※ '민감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작성일자로부터 3년간 유효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EFORM 제출 방법)



개인정보 동의서
(EFORM 제출 방법)

① [EFORM 전자동의서 절차 안내] 작성법 확인 및 전자동의서 클릭

② [생성] 클릭시 전자동의서 전송가능한 링크 생성

③ [복사하기] 생성된 링크 복사 팝업창 확인 후, 근로자에게 전송 및 작성 요청

④ [전자동의서 제출 현황] 기업담당자 해당 근로자 제출 현황 확인

⑤ [제출] 내용 확인 후 임시저장 또는 [제출] 버튼 클릭

※ '민감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작성일자로부터 3년간 유효 합니다.

취약계층 고용비율(유급근로자 해당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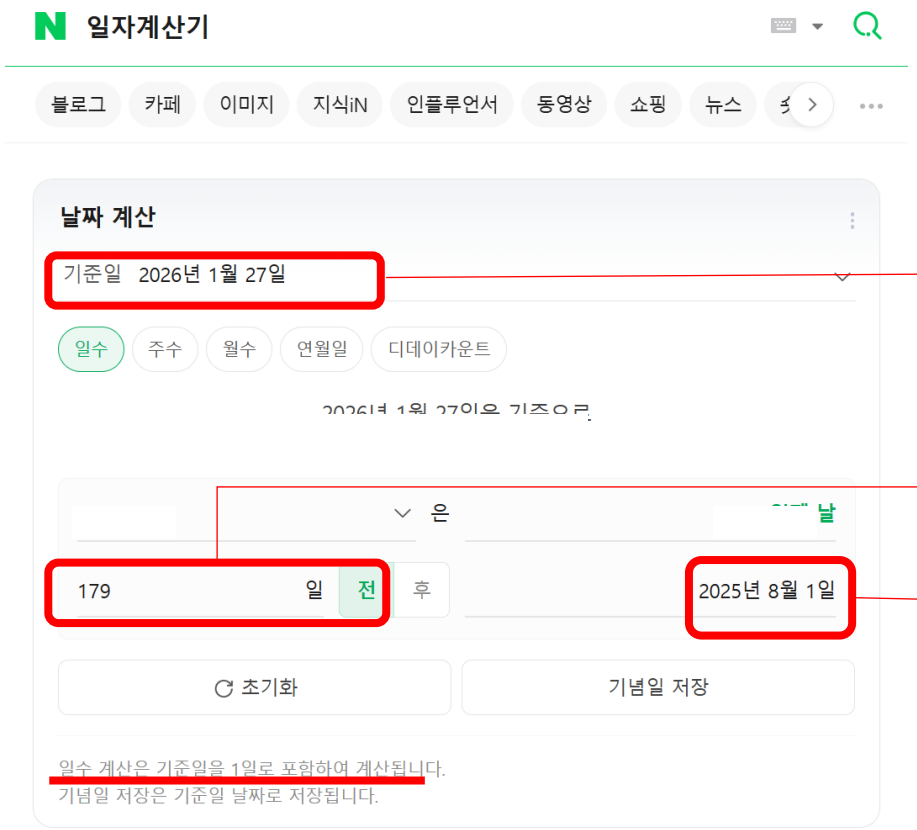
유급근로자 해당 여부(일자계산기 활용)

※ [유급근로자 해당여부] : 신청시점 기준 고용보험 180일 이상 지속 가입자 해당

(고용보험 180일 미만 → 유급근로자 미해당)

※ [취약계층 충족여부] : 신청시점 기준 고용보험 180일 이상 지속 가입자 중 서류 검토 결과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만 충족

(일반근로자, 취약계층이더라도 고용보험 180일 미만 → 취약계층 미충족)



기준일에 신청일자 입력

* 보완 과정에서 신청일자 이후로 인원 계산하길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취득자명부를 재신청일자 기준으로 발급 및 첨부 받아서 일자 계산

기준일을 1일로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179]일 입력 및 [전]클릭

유급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자 결과값을 바탕으로 해당여부 및 충족여부 변경

4 취약계층 증빙서류 검토 방법 27p

0. 공통 ---------- 28p
1. 저소득자 ---------- 29p
2. 고령자 ---------- 30p
3. 장애인 ---------- 31p
4. 성매매 피해자 ---------- 35p
5.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36p
6. 북한이탈주민 ---------- 37p
7. 가정폭력 피해자 ---------- 37p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38p
9. 결혼이민자 ---------- 39p
10. 갱생보호 대상자 ---------- 40p
11. 범죄구조피해자 ---------- 41p
12. 기타 ---------- 4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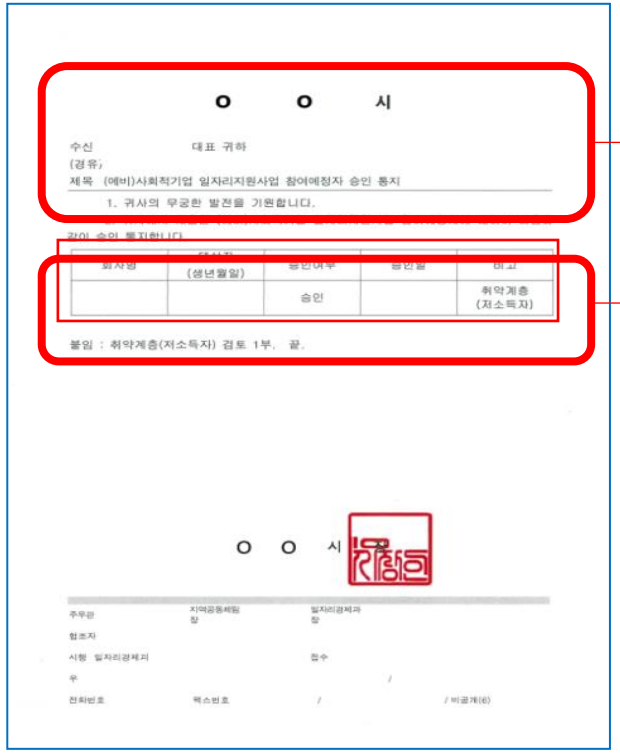
취약계층 검토 방법(공통)

※ 취약계층 확인 공통 사항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 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 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증빙

· 일자리창출사업 승인 공문



ㅇ ㅇ 시

수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사업 참여예정자 승인 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사명	성명 (생년월일)	승인여부	승인일	비고
		승인		취약계층 (저소득자)

붙임 : 취약계층(저소득자) 검토 1부. 끝.

ㅇ ㅇ 시

* 신청기업과 일치 여부 확인
*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승인된 공문인지 확인(타 지원사업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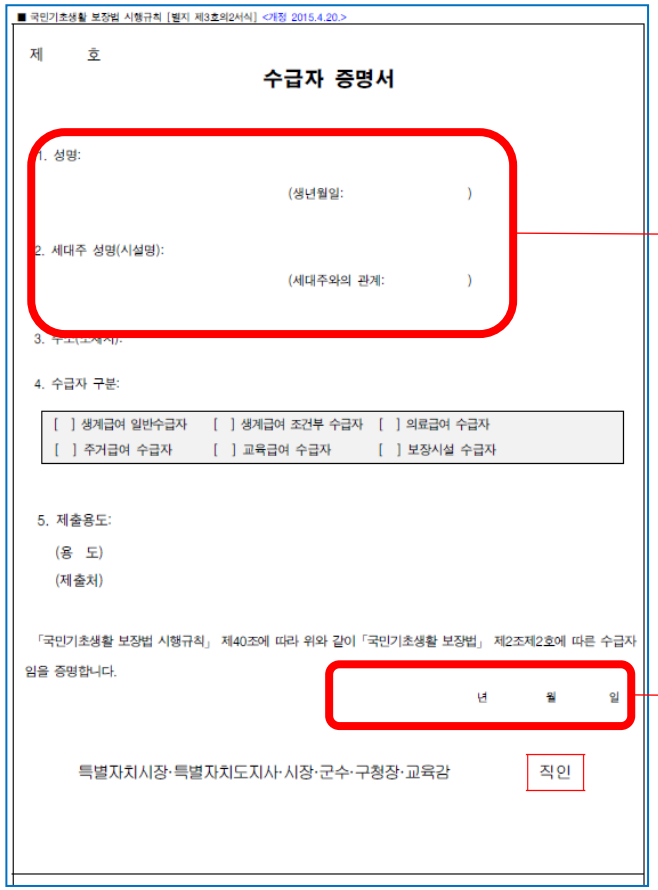
* 근로자 성명 확인
* 취약계층으로 승인된 근로자인지 확인(일반, 전문인력X)

취약계층 검토 방법(저소득자)

제1호.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증빙1 · 수급자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의 경우 발급 일자 확인(입사 및 예비·인증 당시 발급한 서류 인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4.20.>

제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5.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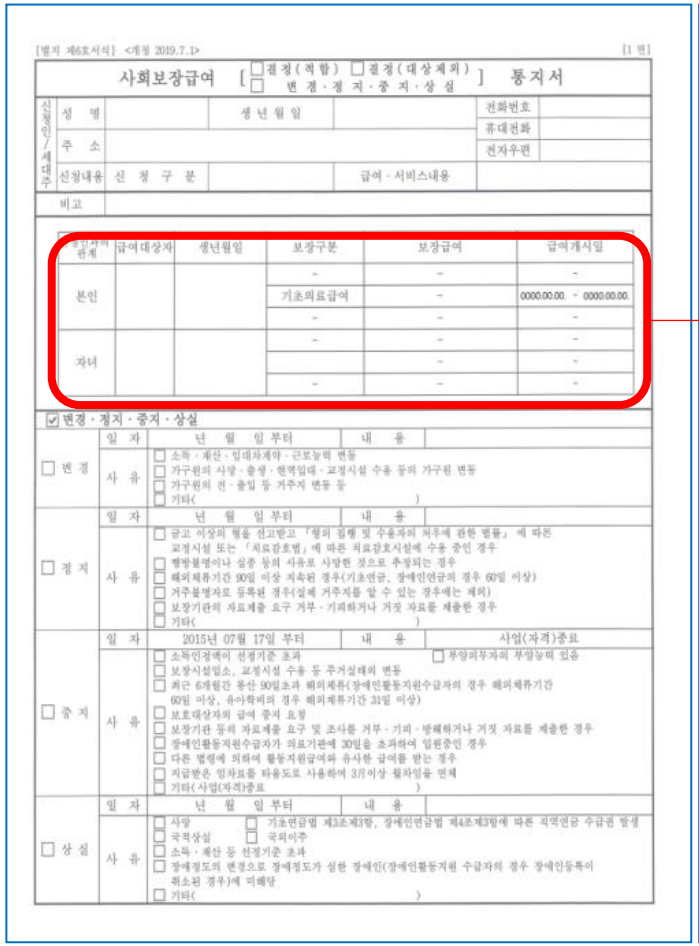
* 근로자 성명 확인

* 발급 일자 확인
(입사당시 발급 서류가 아닌 경우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제출)

취약계층 검토 방법(저소득자)

제1호.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증빙2 ·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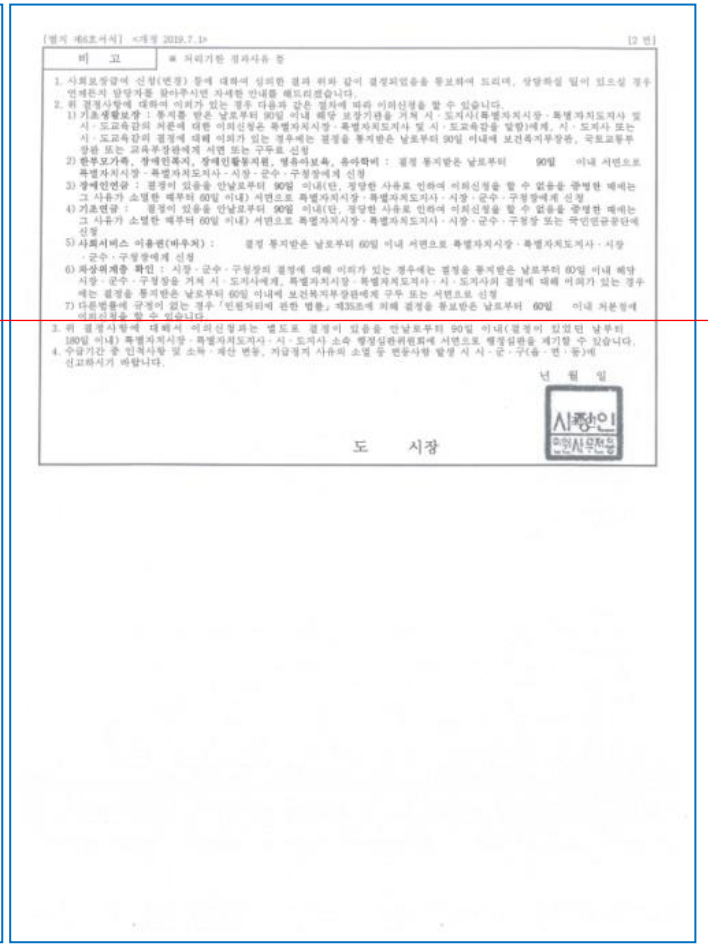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전자우편	
비고					

신청자와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본인			-	-	-
			기초의료급여	-	0000.00.00. ~ 0000.00.00.
			-	-	-
자녀			-	-	-
			-	-	-
			-	-	-

☑변경·정지·중지·상실

☐변경	일자	년 월 일부터
	사유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가구원의 사망·출생·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기타( )
☐정지	일자	년 월 일부터
	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타( )
☐중지	일자	2015년 07월 17일 부터 / 내용 / 사업(자격)종료
	사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받은 일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입을 연체 ☐기타(사업(자격)종료)
☐상실	일자	년 월 일부터 / 내용
	사유	☐사망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적연금 수급권 발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기타( )



비고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안내문의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6)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7) 다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거주형태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도 시장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

* 근로자 성명 확인
* 보장급여 기간 내 사회적기업 입사일이 있는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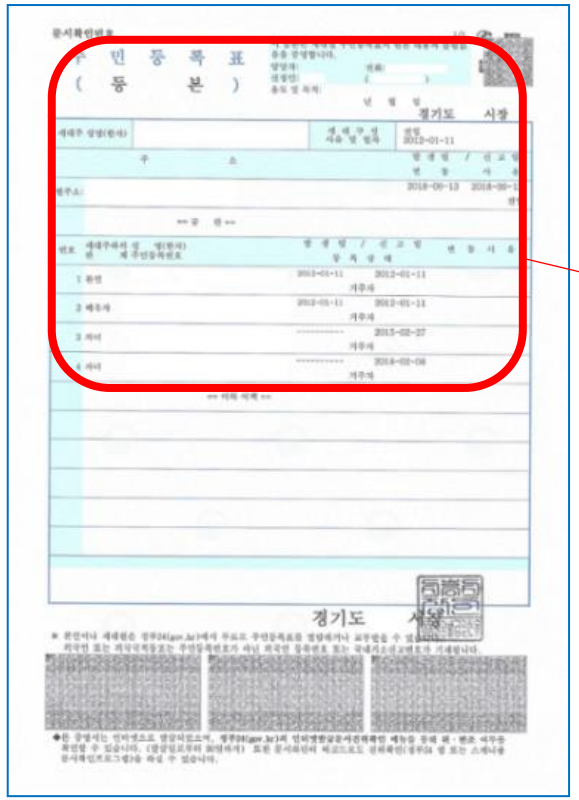
취약계층 검토 방법(저소득자)

제1호.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증빙3 · 주민등록등본 + 등본에 있는 모든 자((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일용포함))

① [등본]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발생일, 변동사유, 세대주와의 관계가 보이도록 출력하여 제출

* 주소변동(이동한 가족의 초본+이동없는 가족의 등본+가족관계증명서(형제 등 구성원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

* 근로자 및 가구원 관계 및 개별 신고일 확인하여 입사(또는 인증)전 6개월간 같이 거주한 가구원 수 기준 소득 계산
(이사 등으로 주소 변동 있는 인원 초본 추가 보완)

취약계층 검토 방법(저소득자)

제1호.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증빙3 · 주민등록등본 + 등본에 있는 모든 자((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일용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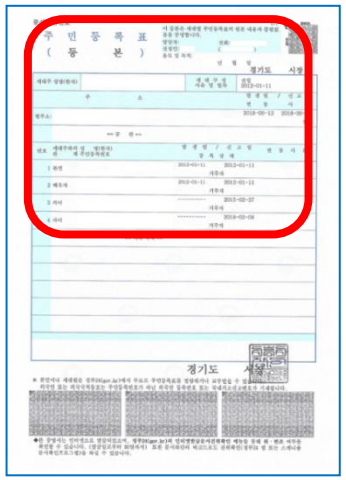
②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모두 제출(사회적기업 입사 전 6개월 간 월평균소득 확인, 단순 동거인 제외)

* [소득금액증명 확인 기준] : 근로소득 →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 [본인소득내역 확인]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한 최근 소득 (최근 연도 2026년 이후 조회)

  ▷ 경로 : [국세청홈텍스→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제출 →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에서 본인 소득 총액 및 월별내역 조회 전체화면 캡처
* 최근 소득 중 홈텍스 조회 불가한 월은 해당기간 근로한 사업장에 요청하여 원천징수영수증 구비(서류 확인 중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직인), 이체확인내역 등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또는 입사 전 연도부터 현재 사업장 근로기간을 포함한 [소득금액증명]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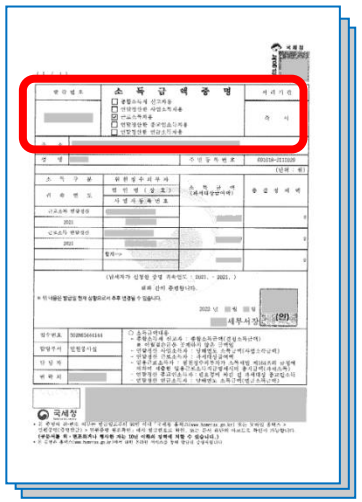
  ▷ 경로: [국세청홈텍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

③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일용포함)] : 등본에 기재된 인원 모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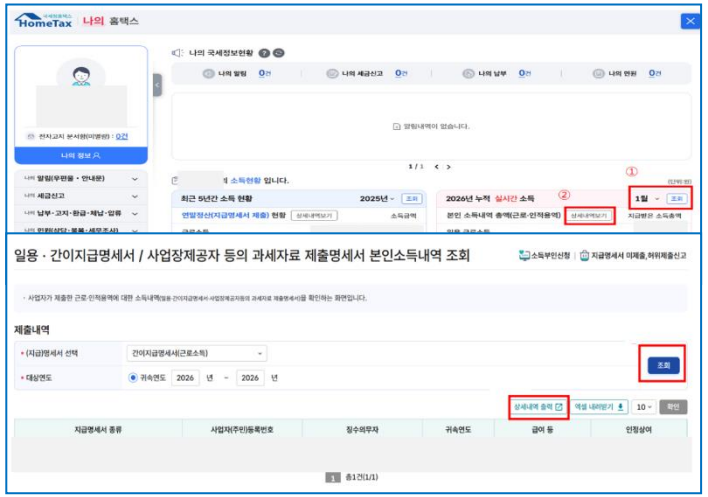


주민등록표 (등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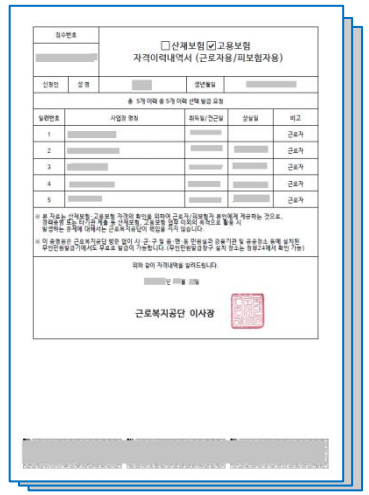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조회되지 않는 최근 연도의 경우) 본인소득내역확인 화면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일용포함)

취약계층 검토 방법(저소득자)

제1호.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직전년도 3/4분기 의 월 평균 소득

[저소득자 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	804,294	827,276	769,048	851,994	863,336	936,909	918,850	971,829	1,029,487
2인	1,396,156	1,449,387	1,452,657	1,511,991	1,603,685	1,704,470	1,830,250	1,912,919	1,904,979
3인	1,969,319	2,108,077	2,077,525	2,225,379	2,385,630	2,539,879	2,628,447	2,713,692	2,771,118
4인	2,280,311	2,403,657	2,366,367	2,517,348	2,749,099	2,937,952	2,994,801	3,065,884	3,152,582
5인 이상	2,395,613	2,540,647	2,585,637	2,826,444	2,856,503	2,976,492	3,018,893	3,311,600	3,233,056

[단위: 원]

가구원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인	1,043,277	1,006,626	1,053,954	1,132,674	1,433,656	1,594,629	1,718,386	1,669,741	1,764,623	1,834,093
2인	1,885,918	1,987,399	1,974,900	2,054,841	2,235,550	2,512,597	2,629,363	2,760,708	2,877,831	3,083,848
3인	2,834,764	2,913,278	3,086,764	3,153,183	3,415,986	3,716,509	3,834,291	3,935,712	4,421,164	4,662,255
4인	3,213,756	3,286,477	3,486,185	3,602,555	4,089,882	4,267,303	4,336,102	4,773,869	4,899,391	4,968,037
5인 이상	3,268,902	3,236,883	3,669,790	3,863,369	3,992,680	4,330,945	4,606,819	5,337,598	5,520,451	5,954,704

취약계층 검토 방법(고령자,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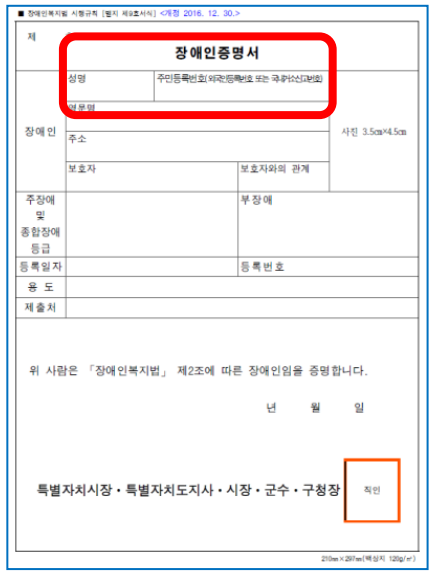
제2호.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

증빙 · 없음(시스템 자동 확인_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계산)

제3호. 장애인(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증빙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중 1개 서류

- "국가유공자증" 내 보훈번호 21(전상), 23(공상)만 상이군경회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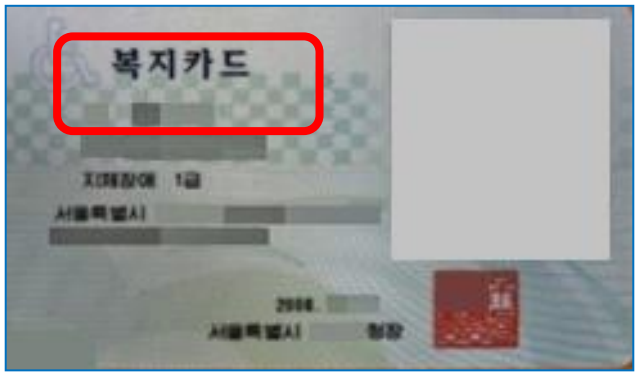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주장애 및 종합장애 등급		부장애
등록일자		등록번호
용 도		
제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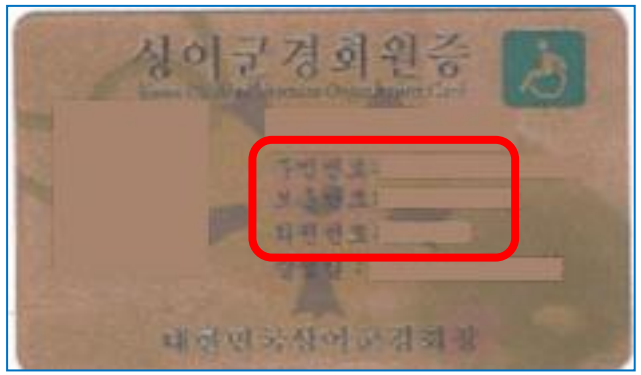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보훈번호(21, 23) 확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성매매 피해자)

제4호. 성매매 피해자

증빙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성매매 피해자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고용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하는자에의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의한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취약계층 검토 방법(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제5호.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 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증빙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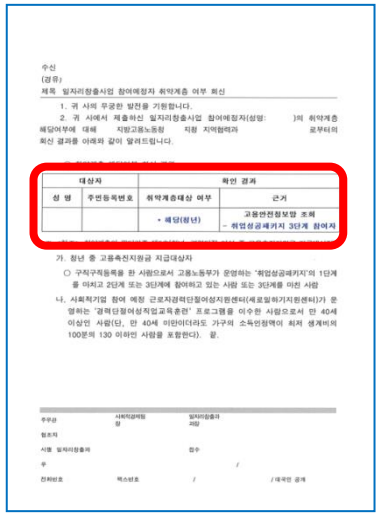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내 1요건심사형 캡처 화면" (중위소득의 100의 60이하)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중)
· (`26년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내 1·2유형 캡처 화면" (중위소득의 100의 60이하)

* 대상자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 중 Ⅰ유형 청년특례(중위소득120%이하)_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자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내 1요건심사형 캡처 화면 또는 지원제도 컨설팅기관에 참여자정보 시스템 캡처 요청하여 첨부_중위소득확인)

※ 구 확인 서류(청년경단녀 중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 : 2017년 하반기 입사자 _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인서(1유형), 2017년 상반기까지 입사자_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인서(1,2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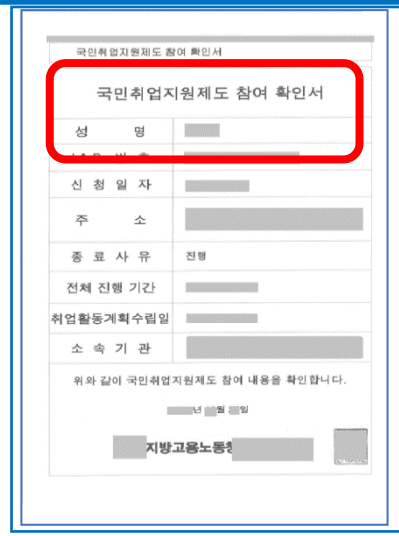
증빙2

·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_수료증, 입사당시 만35세 이상_2024년부터 새로 확인하는 취약계층부터 적용, 기존 만40세에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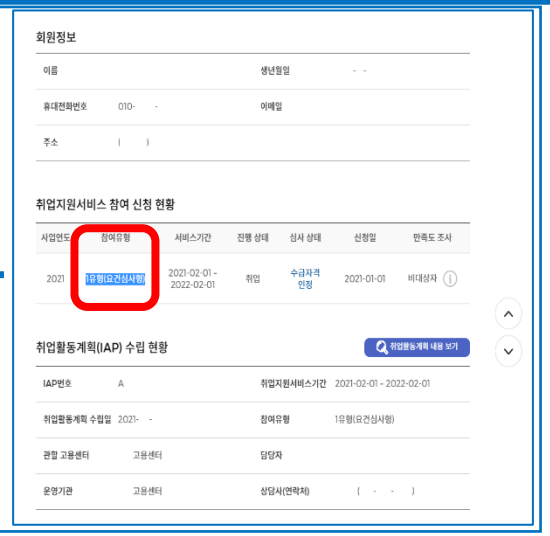


일자리창출사업 승인 공문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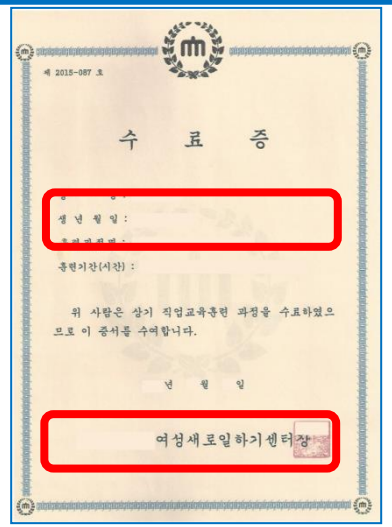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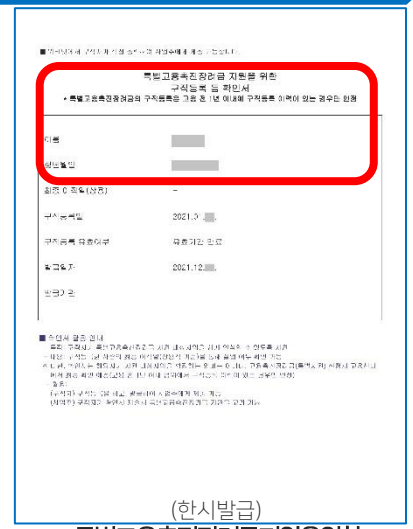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내 참여 정보 캡처 화면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직업교육훈련 수료증(만35세이상)
직업교육훈련 2개월 이상' + '구직등록 또는 실업기간 3개월 이상'

또는



(한시발급)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원을위한
구직등록등확인서

취약계층 검토 방법(북한이탈주민, 가족폭력 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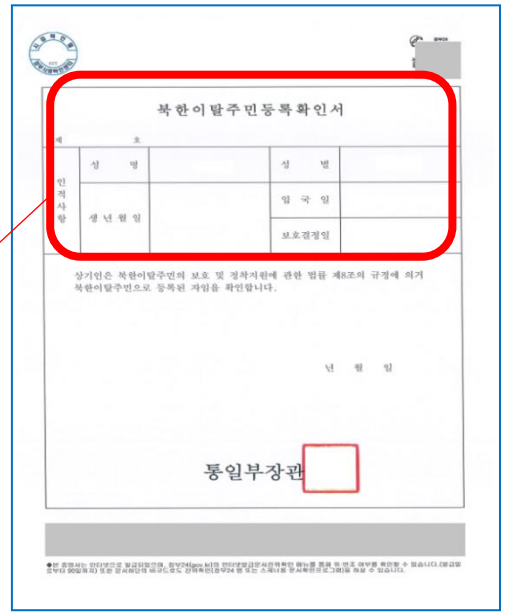
제6호. 북한이탈주민

증빙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발급처: 민원24(www.minwon.go.kr) 혹은 방문신청(각 시군구, 통일부, 각 시도)
· 발급절차: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해외남북교류; 새터민지원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 ⇒ 민원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확인 후 문서출력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증빙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 가정폭력 피해자 정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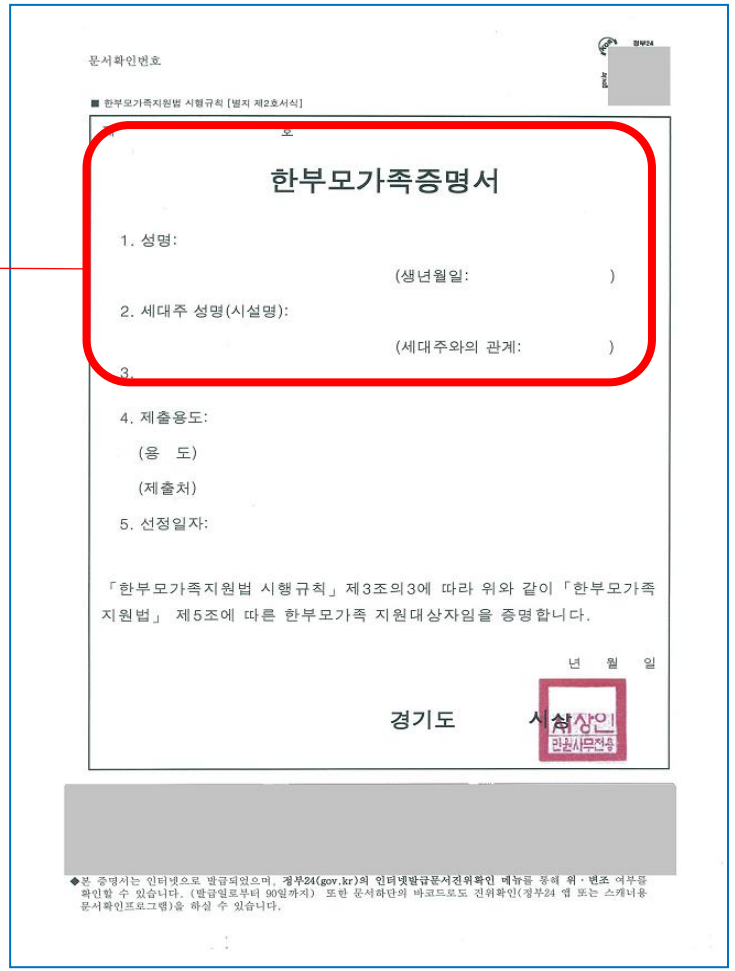
취약계층 검토 방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증빙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문서확인번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3.
4.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5. 선정일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시장 상인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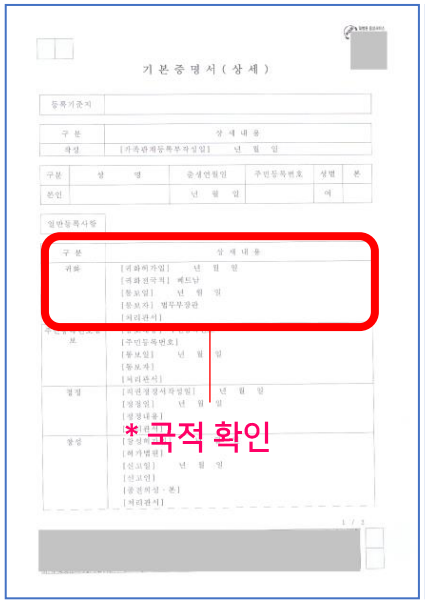
취약계층 검토 방법(결혼이민자)

제9호.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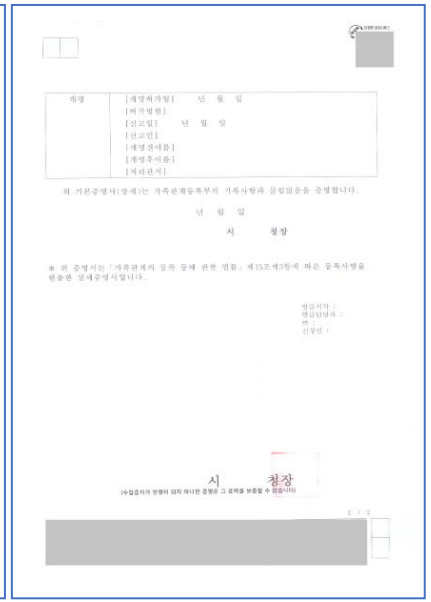
증빙1 · 국적 취득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상세_취득전 국적)+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증빙2 · 국적 미취득 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결혼 이민) 또는 외국인등록증(F-2, F-5, F-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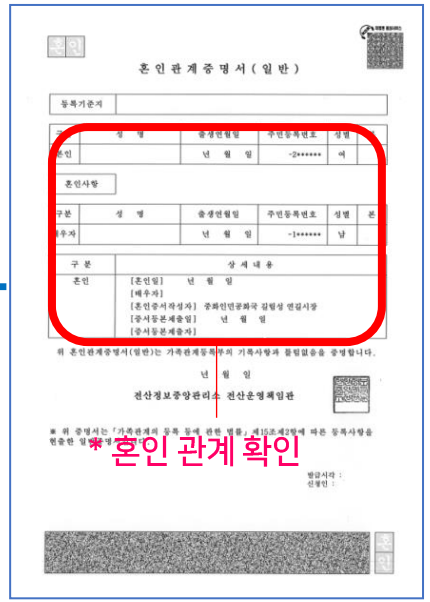
국적 취득자



기본증명서(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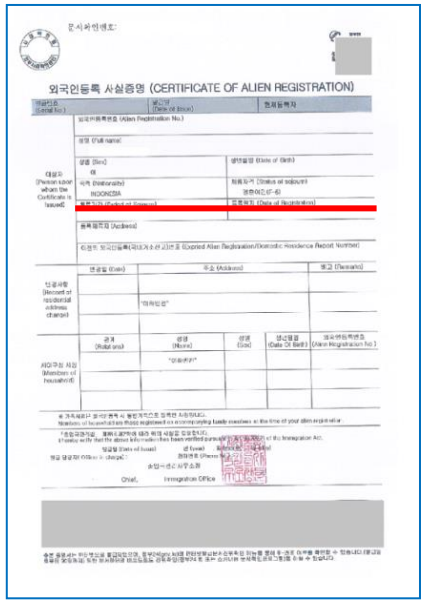


+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취득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영주 자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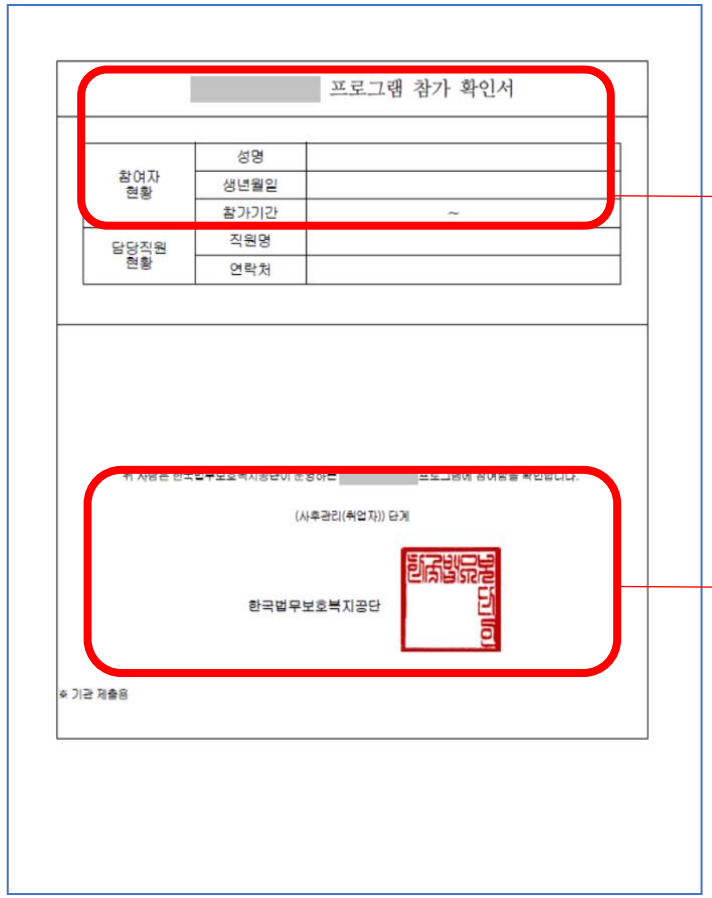
외국인등록증

취약계층 검토 방법(갱생보호 대상자)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증빙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갱생보호 대상자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redacted]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참여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참가기간	~
담당직원 현황	직원명	
	연락처	

[redacted]

(사후관리(취업자)) 단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기관 제출용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 관련 기관 확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범죄구조피해자)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증빙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 범죄구조피해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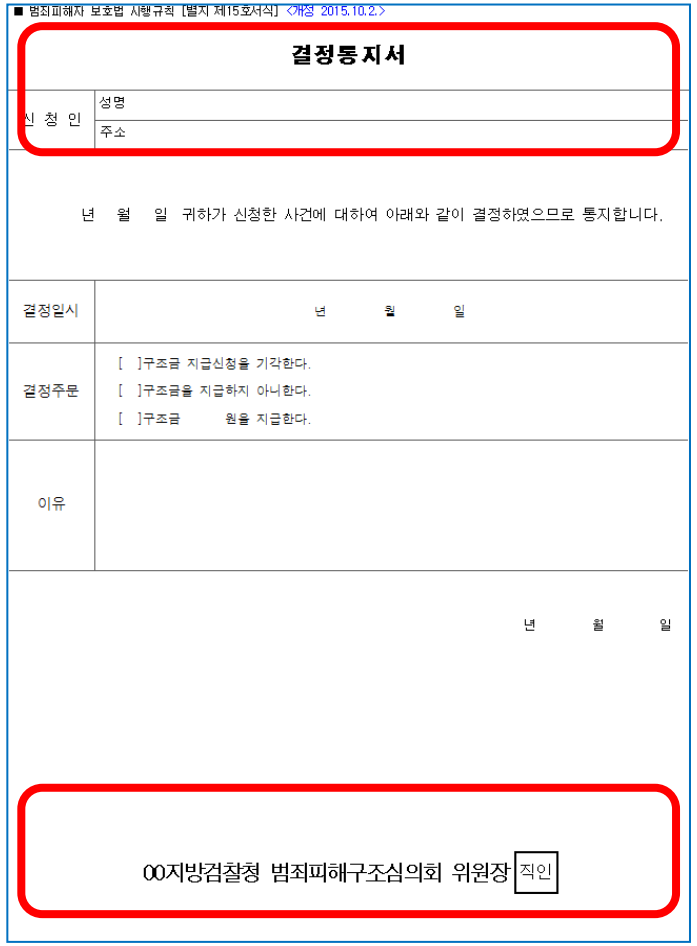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0.2.>

결정통지서

신청인	성명
	주소

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결정일시	년 월 일
결정주문	[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한다. [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조금 원을 지급한다.
이유	

년 월 일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 직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

제12호. 기타

증빙 · 구분 별 증빙 상이

페이지	기타 항목(11종)		증빙
55p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비교하여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
56p	나.	수형자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확인서(노역유치자 제외)
-	다.	소년원생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확인서
-	라.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57p	마.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58p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59p	아.	여성가장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확인서, 교도소 수용확인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혼인관계증명서), 통·반장의확인서등)
60p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난민인정증명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61p	차.	자립준비청년 (만18세이후보호종료된아동중만34세이하인자)	보호종료확인서(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62p	카.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등(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1년 이상 장기 실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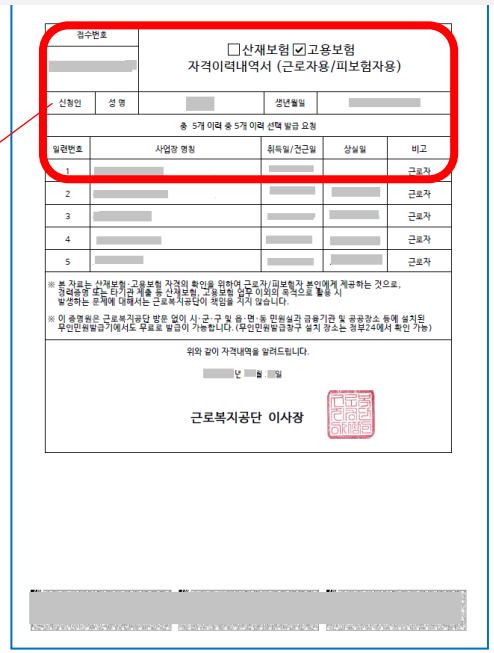
제12호. 기타 ▶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증빙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 **구직등록 기록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구직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보험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 구직등록기록: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구직등록일로 부터 1년 이상 실업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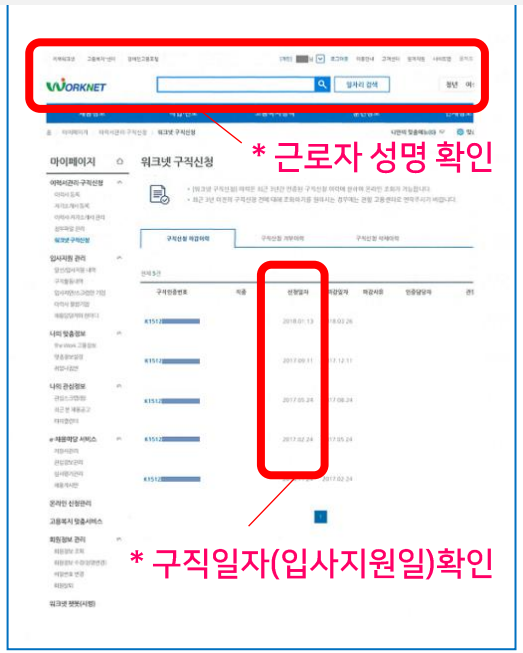
예) 2019.01.01 고용보험 상실 및 2023.01.01 사회적기업 고용보험 취득 → 2019.01.01~2022.12.31 기간 중 구직등록 기록 확인 서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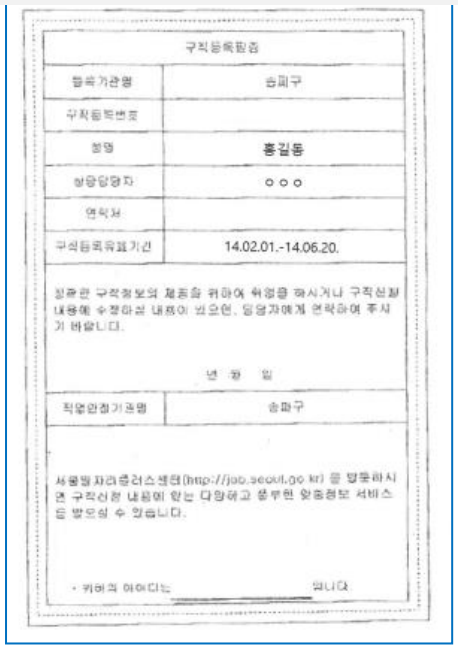
* 고용보험이력표기,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상실일 확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서 발급)

+



워크넷 구직신청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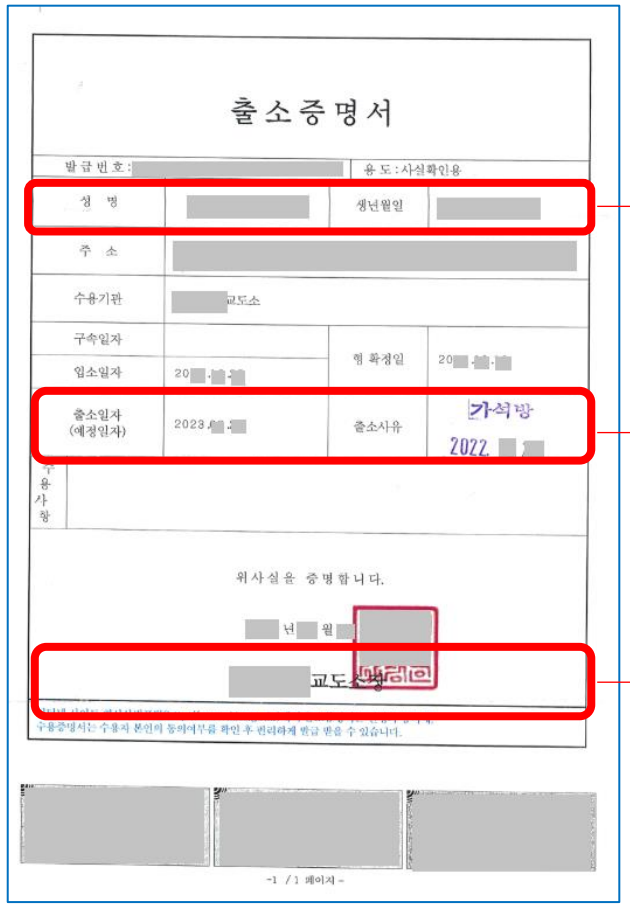
구직등록 확인증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수형자)

제12호. 기타 ▶ 나. 수형자

증빙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수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출소증명서

발급번호: [redacted] 용도 : 사실확인용

성명	[redacted]	생년월일	[redacted]
주소	[redacted]		
수용기관	[redacted]교도소		
구속일자		형 확정일	20[redacted]
입소일자	20[redacted]		
출소일자 (예정일자)	2023.[redacted]	출소사유	가석방 2022.[redacted]
수용사항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redacted]년 [redacted]월 [redacted]

[redacted]교도소장

-1 / 1 페이지-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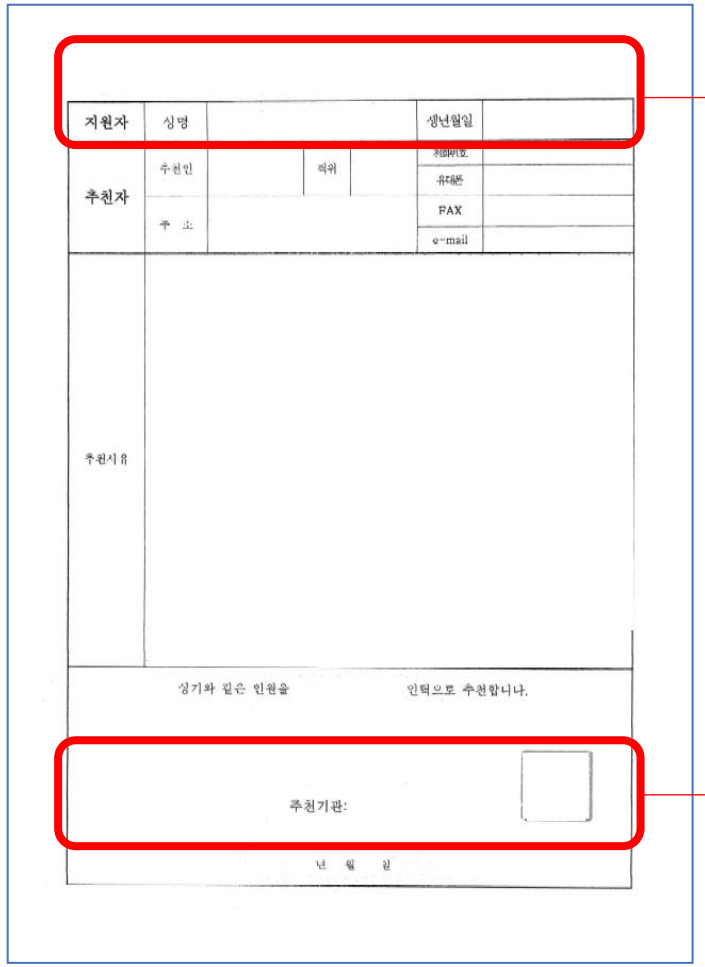
* 출소일자 확인(입사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확인)

* 관련 발급 기관 확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노숙인)

제12호. 기타 ▶ 마. 노숙인

증빙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 관련 발급 기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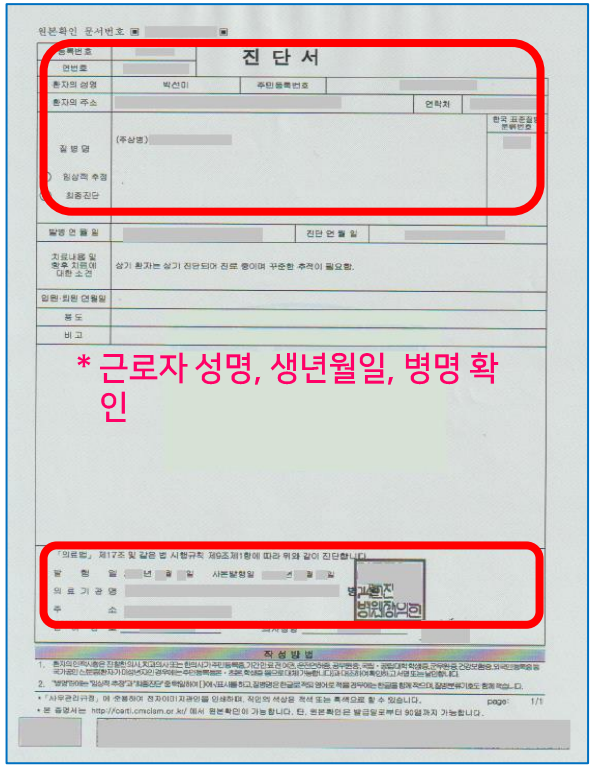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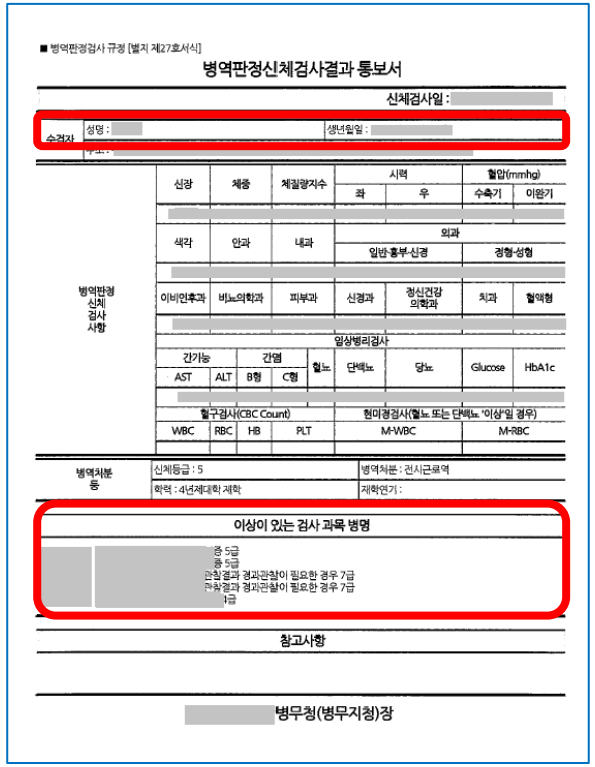
제12호. 기타 ▶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증빙 ·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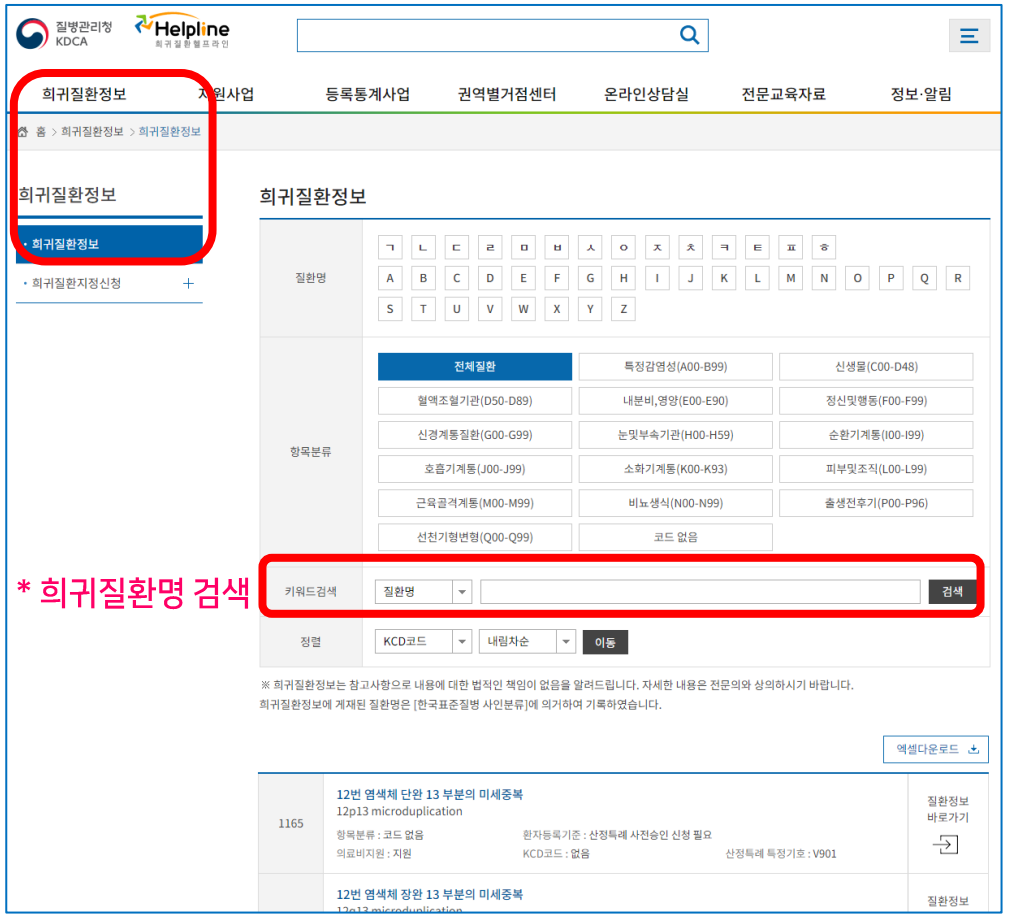
· 증빙 서류 : 병원 진단서 또는 국가기관 확인 서류(질환명 및 질병 코드 확인)

· 확인 방법 :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접속 → 희귀질환정보 검색





병원 진단서 또는 국가기관 확인 서류(질환명 및 질병 코드 확인)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접속 → 희귀질환정보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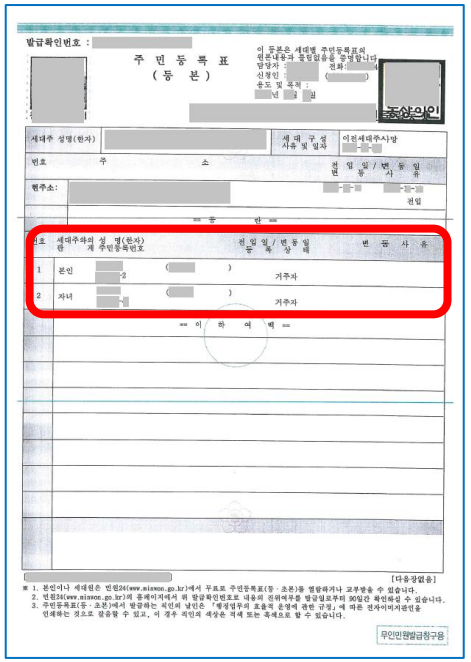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 여성가장)

제12호. 기타 ▶ 아. 여성가장(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

증빙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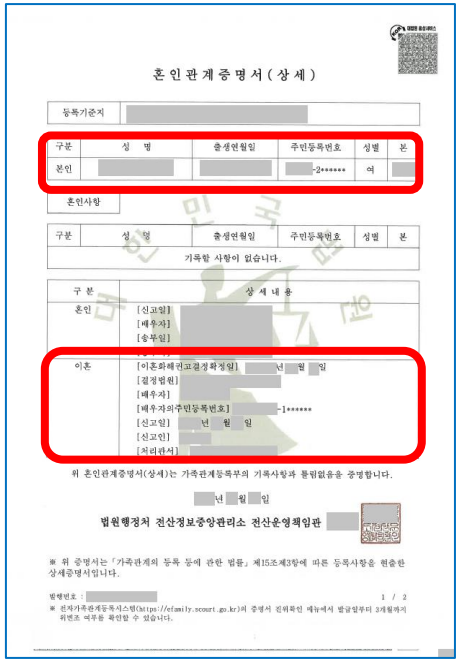
①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②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③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확인서, 교도소 수용확인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혼인관계증명서), 통·반장의확인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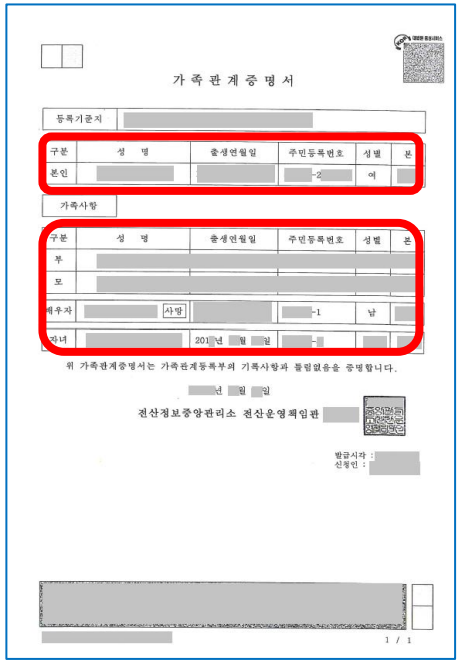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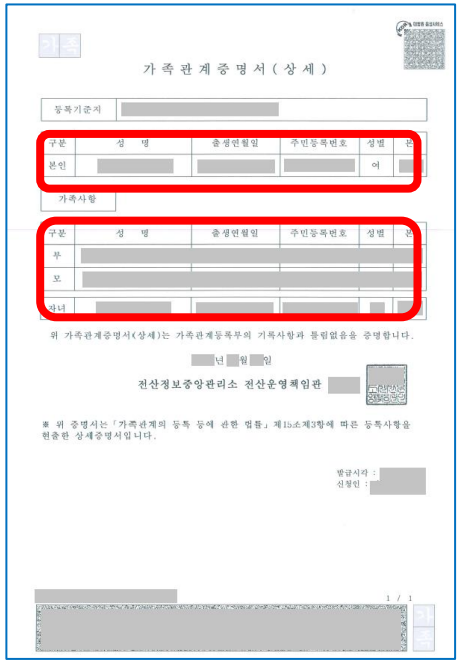
등본(직계존비속 만60세 이상 또는 만18세 미만 생년월일 및 거주) 확인

+



혼인관계(배우자였던 자) 확인





혼인관계(배우자였던 자 및 직계존비속) 확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난민)

제12호. 기타 ▶ 자. 난민

증빙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2. 31.>

증서번호 Certificate No.

난민인정증명서
CERTIFICATE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

성 명 :
Full Name

생년월일 :
Date of Birth

국 적 :
Nationality

사 진
PHOTO
3.5cm×4.5cm

귀하는 「난민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Pursuant of Article 18(1) of the Refugee Act, the holder of this certificate is recognized as a refugee.

주의사항 (NOTICE)

난민인정이 취소·철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be returned immediately when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is cancelled/withdrawn or an Exit Order has been issued.

년 월 일
yyyy mm dd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직인
Official Seal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

210㎜×297㎜[백상지(150g/㎡)]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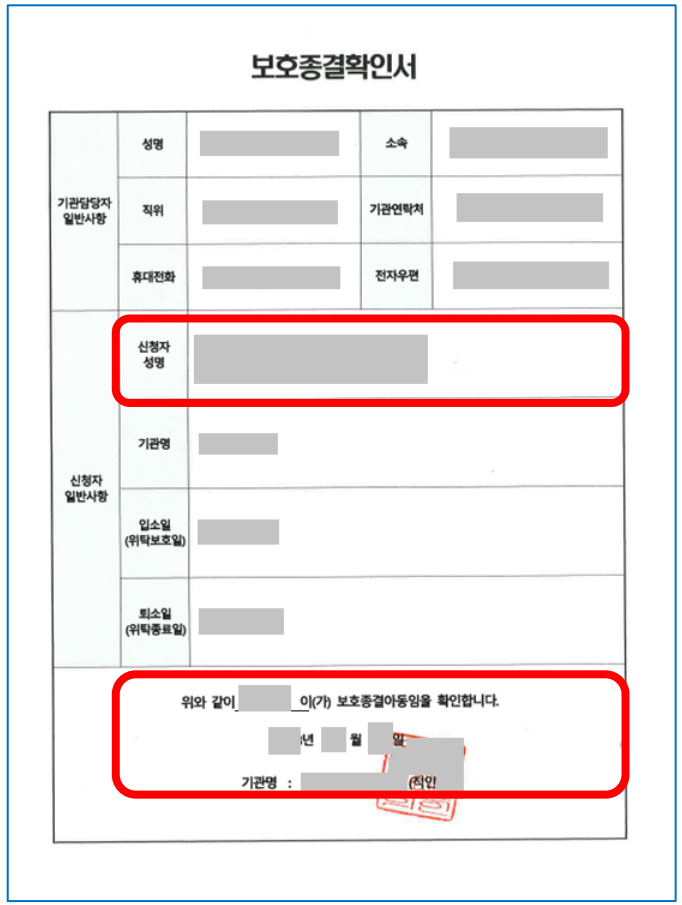
* 관련 발급 기관 확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보호종료아동)

제12호. 기타 ▶ 차. 자립준비청년

증빙 · 보호종료확인서(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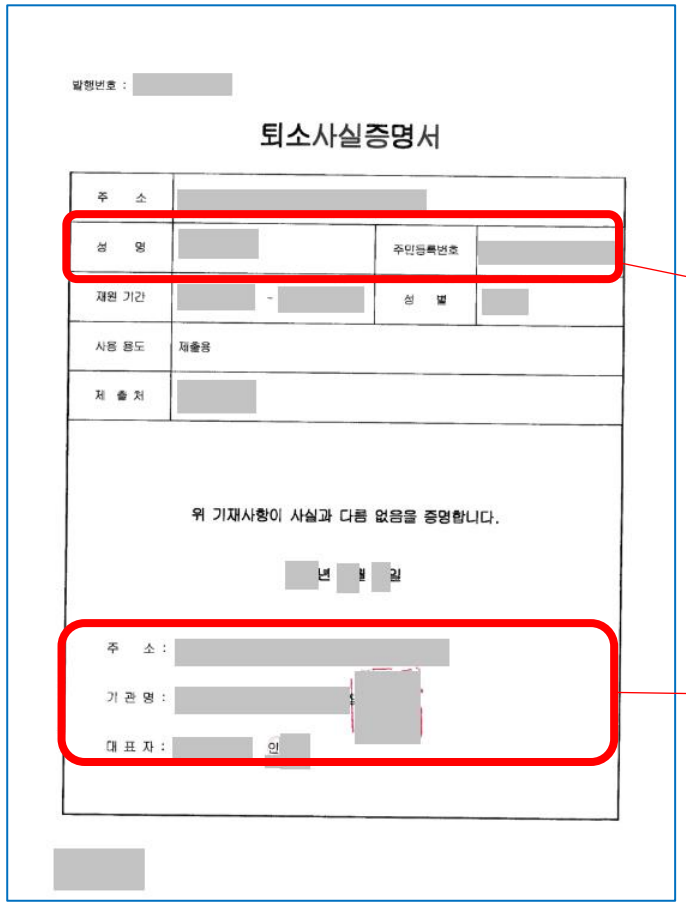

보호종결확인서

기관담당자 일반사항	성명		소속	
	직위		기관연락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자 일반사항	신청자 성명			
	기관명			
	입소일 (위탁보호일)			
	퇴소일 (위탁종료일)			

위와 같이 ___ 이(가) 보호종결아동임을 확인합니다.

___년 ___월 ___일

기관명 : ___ (직인)


발행번호 : ___

퇴소사실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원 기간	___ - ___	성 별	
사용 용도	제출용		
제 출 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___년 ___월 ___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___ 인

___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등 정보 확인
(입사당시 만34세 이하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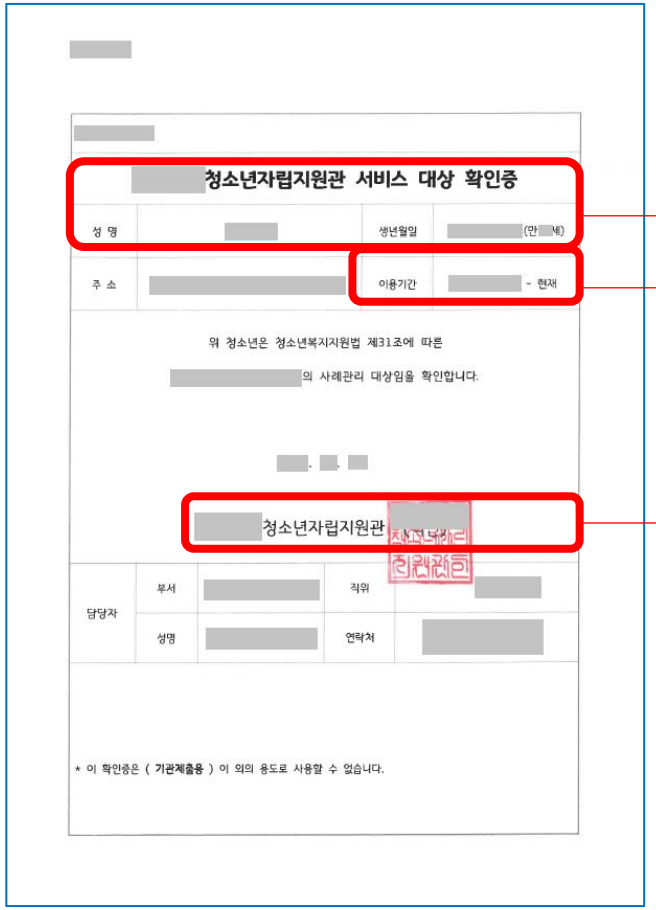
* 관련 발급 기관 확인

취약계층 검토 방법(기타_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제12호. 기타 ▶ 카.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증빙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등(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소년)

▶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정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에 입·퇴소한 자



청소년자립지원관 서비스 대상 확인증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이용기간	~ 현재

위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의 사례관리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 이 확인증은 (기관제출용)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

* 이용기간 1년 이상 여부 확인

* 관련 발급 기관 확인

5 질문과 답변 51p

+ 질문과 답변 ---------- 52p

+ 질문과 답변

1. 1년이상 장기실업자 서류로 실업급여수급상세내역서(고용지청직인)만 있습니다. 구직등록을 해야 실업급여가 나오며, 구직등록을 한지 3년이 넘어 기록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 실업급여수급상세내역서는 증빙으로 유효합니다.(실업급여수급상세내역서+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제출)

2. 근로자 중 퇴사자가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는 아직 포함된 상태입니다.

▶ 퇴직한 근로자를 유급근로자명부에서 제외 및 관련 서류(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등)를 제출해주세요.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에 있는 유급근로자 인원이 실제 고용한 인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180일 미만으로 가입된 자의 경우 유급근로자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4. 유급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데 비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타 사업장 가입자로 고용보험조회가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함에도 고용보험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명부로 고용보험 가입일자를 확인합니다.

5. 취약계층 근로자 퇴사 후 다른 취약계층을 고용하였습니다. 아직 180일이 되지 않았는데 유급근로자로 인정되나요?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합니다.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아닐 경우, 유급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질문과 답변

6. 지점 근로자 확인 관련

▶ 지점 근로자도 포함하여 확인합니다. 사회적기업 리스트에서 지점 사항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이스토어36.5 → 우선구매실적/공공구매 → 우선구매 공지사항)

7.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의 검색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일 당일 및 전일 포함한 검색기간 확인하여 유급근로자를 확인합니다.

8.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도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에 포함되나요?

▶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이 서비스 하는 대상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의 고용인원 및 취약계층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근로자 민감정보동의서를 매번 작성하는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 민감정보동의서는 3년 유효하며 PDF 작성시에는 다운로드후 잘 보관하셔서 유효기간내 사용 하시길 바랍니다.
단, 서식이 변경되는 경우 및 EFORM 개인정보동의서는 아직 시스템상 다운로드가 되지 않으므로, 매번 작성하셔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신청 매뉴얼

2026.11.12.
(신청기업용)